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I.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2946호
2. 제 출 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3. 제출일자 : 2021년 10월 29일
4. 회부일자 : 2021년 11월 1일

II. 제안사유

-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함.

III. 예산안 편성규모

1. 예산안 개요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년도 예산안(A)	2021년도 본예산(B)	비교증감	
				증감액(A-B)	비율(%)
총 규 모		10,580,269	9,741,994	838,275	8.6
세 입	중앙정부이전수입	6,066,512	5,748,655	317,857	5.5
	자치단체이전수입	4,058,767	3,605,550	453,217	12.6
	기타이전수입	8,732	8,967	△235	△2.6
	자체수입	112,012	79,028	32,984	41.7
	전년도이월금	324,342	280,604	43,738	15.6
	금융자산회수	9,904	19,190	△9,286	△48.4
세 출	인건비	6,586,377	6,325,713	260,664	4.1
	기관운영비	33,000	29,924	3,076	10.3
	학교운영비	882,223	841,989	40,234	4.8
	교육사업비	2,249,079	1,886,956	362,123	19.2
	시설사업비	636,988	517,413	119,575	23.1
	재무활동	130,613	129,934	679	0.5
	예비비및기타	61,989	10,065	51,924	515.9

2. 세입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년도		2021년도		증 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비율	
중정 이전 수입	보 통 교 부 금	5,251,974	49.6	4,933,216	50.6	318,758	6.5	
	특 별 교 부 금	106,518	1.0	79,920	0.8	26,598	33.3	
	증 액 교 부 금	162,317	1.5	176,710	1.8	△14,393	△8.1	
	국 고 보 조 금	23,328	0.2	21,218	0.2	2,110	9.9	
	특 별 회 계 전 입 금	522,375	4.9	537,591	5.5	△15,216	△2.8	
	계	6,066,512	57.2	5,748,655	59.0	317,857	5.5	
자치 단체 이전 수입	법정	지 방 교 육 세	1,966,277	18.6	1,730,527	17.8	235,750	13.6
		담 배 소 비 세	257,189	2.4	261,068	2.7	△3,879	△1.5
		시 도 세	1,662,994	15.7	1,431,797	14.7	231,197	16.1
		학 부 교 용 담 지 금	1,995	0.1	7,386	0.1	△5,391	△73.0
		지 방 교 육 재 정 교 부 금 보 전 금	96,595	0.9	105,918	1.1	△9,323	△8.8
		교육급여보조금	9,653	0.1	8,411	0.1	1,242	14.8
		무 상 교 육 경 비 전 입 금	15,143	0.1	16,567	0.2	△1,424	△8.6
		소 계	4,009,846	37.9	3,561,674	36.6	448,172	12.6
	비법정	광역자치단체	40,345	0.4	42,276	0.4	△1,931	△4.6
		기초자치단체	8,576	0.1	1,600	0.0	6,976	436.0
		소 계	48,921	0.5	43,876	0.5	5,045	11.5
	계	4,058,767	38.4	3,605,550	37.0	453,217	12.6	
	기타이전수입(기타지원금)		8,732	0.1	8,967	0.1	△235	△2.6
	자체 수입	교 수 학 습 활 동 수 입	1,464	0.1	2,141	0.0	△677	△31.6
행 정 활 동 수 입		4,718	0.1	4,901	0.1	△183	△3.7	
자 산 수 입		7,519	0.1	11,892	0.1	△4,373	△36.8	
이 자 수 입		5,607	0.1	7,693	0.1	△2,086	△27.1	
기 타 수 입		92,704	0.8	52,401	0.5	40,303	76.9	
계		112,012	1.2	79,028	0.8	32,984	41.7	
지 방 채		0	0.0	0	0.0	0	0.0	
기타	전 년 도 이 월 금	324,342	3.0	280,604	2.9	43,738	15.6	
	금 용 자 산 회 수	9,904	0.1	19,190	0.2	△9,286	△48.4	
	계	334,246	3.1	299,794	3.1	34,452	11.5	
합 계		10,580,269	100	9,741,994	100.0	838,275	8.6	

3. 세출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년도		2021년도		증 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비율	
인건비	공 무 원	4,477,565	42.3	4,336,641	44.5	140,924	3.2	
	계 약 제 교 원 및 교 육 공 무 직 원	826,305	7.8	682,858	7.0	143,447	21.0	
	사 립 학 교	1,282,507	12.1	1,306,214	13.4	△23,707	△1.8	
	계	6,586,377	62.2	6,325,713	64.9	260,664	4.1	
경상비	교 육 행 정 기 관 운 영 비	33,000	0.3	29,924	0.3	3,076	10.3	
	학 교 운 영 비	공 립	671,251	6.3	647,372	6.6	23,879	3.7
		사 립	210,972	2.0	194,617	2.0	16,355	8.4
		소 계	882,223	8.3	841,989	8.6	40,234	4.8
	계	915,223	8.6	871,913	9.0	43,310	5.0	
사업비	교 육 사 업 비	2,249,079	21.3	1,886,956	19.4	362,123	19.2	
	시 설 사 업 비	학 교 신 증 설	57,512	0.5	108,453	1.1	△50,941	△47.0
		일 반 시 설	520,205	4.9	351,874	3.6	168,331	47.8
		급 식 시 설	59,271	0.6	57,086	0.6	2,185	3.8
		소 계	636,988	6.0	517,413	5.3	119,575	23.1
계	2,886,067	27.3	2,404,369	24.7	481,698	20.0		
재무 활동	지 방 채 상 환 등	52	0.1	15,605	0.2	△15,553	△99.7	
	B T L 상 환	102,392	1.0	101,926	1.0	466	0.5	
	기 금 전 출 금	28,169	0.2	12,403	0.1	15,766	127.1	
	계	130,613	1.3	129,934	1.3	679	0.5	
예 비 비 및 기 타	61,989	0.6	10,065	0.1	51,924	515.9		
합	계	10,580,269	100	9,741,994	100.0	838,275	8.6	

Ⅳ.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이하 ‘예산안’ 이라 함)은 2021년 10월 29일 서울특별시교육감에 의해 의안번호 제2946호로 제출되어 2021년 11월 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금번 예산안은 교육 회복 지속 지원, 격차 없는 공교육을 위한 질 높은 출발선 보장, 미래다움으로 새로운 인간다움을 기르는 미래교육 실현, 건강한 삶의 기초 다지기, 그리고 꿈을 담은 미래형 교육공간 조성 등 5가지 역점과제에 중점을 두어 편성되었습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총괄 검토

- 금번 예산안의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10조 5,802억 6천 9백만원으로, 2021년도 본예산 9조 7,419억 9천 4백만원 보다 8.6%(8,382억 7천 5백만원)증가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표-1] 2018~2022년 예산(안)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본예산액	9,151,267	9,380,315	10,084,661	9,741,994	10,580,269
전년대비 증감액	1,003,542	229,048	704,346	△342,667	838,275
증 감 율	12.3	2.5	7.5	△3.4	8.6

- 금번 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8.6% 증가한 규모로, 이는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 5.5%보다 3.1% 증가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 이와 같은 예산안의 증액 규모는 유아수 및 고등학교 학생수 감소로 인해 ‘특별회계전입금’ 및 ‘증액교부금’이 전년도 보다 각각 152억 1천 6백만원(△2.8%), 143억 9천 3백만원(△8.1%) 감소하였으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중앙정부이전수입 중 보통교부금이 전년도 보다 3,187억 5천 8백만원(6.5%) 증가하였고, 특별교부금은 265억 9천 8백만원, 자치단체 이전수입 중 법정부담금이 전년도 보다 4,481억 7천 2백만원 증가함에 따라 증가율이 향상된 것입니다.
- 그러나 당초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경기 둔화로 인해 국세수입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21년도 본예산이 이전년도보다 감액편성되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2022년도 예산안 규모의 실질적인 증가율은 지난 5년간 증가율의 평균과 비슷한 수준이라 할 것입니다.
- 다만 2021년도 국세수입이 감소될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 달리 2021년도 상반기 세수는 증대되어 약 3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었고, 기획재정부의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국회예산정책처의 중기재정전망에서도 2022년도 이후 국세수입은 당초 계획상 전망보다 개선된 연평균 5.1%의 증가율을 보이게 될 것¹⁾으로 예상되고 있는바, 세입예산의 대부분이 이전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교육비특별회계의 특성을 감안한다면 향후 교육재정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그러나 코로나 19에 대한 빠른 극복 가능성과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국가의 재정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²⁾, 여전히 코로나 19의 재확산 추세, 방역 상황 등에 따른 위

1) <중기 재정수입 전망>

(단위:조원, %)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연평균 증가율
	본예산	2차추경					
재정수입	482.6	514.6	5448.8	570.2	593.9	618.5	4.7
국세수입	282.7	314.3	338.6	352.9	367.7	383.1	5.1
세외수입	28.9	29.3	26.7	27.4	28.4	30.0	0.6
기금수입	171.0	171.0	183.5	189.9	197.7	205.4	4.7

2)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기획재정부, 4쪽.

협요소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 더욱이 내국세에 연동하여 그 예산 규모가 결정되는 지방재정교부금은 학생수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한정된 정부재정의 재원배분의 불균형을 초래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³⁾이 지속적으로 이어 오고 있는바,

이전수입에 대한 재원의존도가 높고 의존재원에 대한 비중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교육비특별회계 구조를 감안할 때 재원확보의 불안정성이 가속될 우려가 있습니다.

[표-2] 2020~2022년 재원 의존도

(단위: 백만원, %)

구분	2020		2021		2022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의존재원	10,187,781	95	9,864,697	95	10,134,010	98.9
자체재원	224,719	2.1	188,917	2	112,012	1.1
지방교육채	316,177	2.9	316,177	3	-	-
계	10,412,500	100	10,053,614	100	10,246,022	100

- 특히 교육청의 재원구조가 고교 무상교육의 전면 실시 등으로 이전수입에 대한 재원 의존도가 더욱 커진 상황임을 고려한다면, 교육청은 코로나 19에 따른 교육력회복 및 원격수업 확대, 그린스마트스쿨 미래학교 추진 등의 미래교육을 안정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교육재정 확보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3) '2022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2권 6면, '기재부"학생 수 감소에도 늘어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시금"', 한겨레, 2021.9.9. 이정훈 기자 보도자료 참고

[표-3] 2020~2022년 자체재원 총괄

(단위: 백만원, %)

구분	2020		2021		2022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수업료 및 입학금	101,977	17.8	107	0.02	-	-
사용료 및 수수료	2,842	0.5	2,286	0.4	4,718	1.0
자산수입	10,782	1.9	702	0.14	7,519	1.7
이자수입	13,910	2.4	4,684	0.94	5,607	1.3
순세계잉여금	381,142	66.5	326,309	66	324,342	75.0
기타수입	62,141	10.9	161,104	32.5	92,703	21.0
계	510,653	100.0	334,088	100.0	342,186	100.0

- 더욱이 교육청은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구조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외부 이전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으며,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감소 등의 경기 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각종 사업비 확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고려해서 적정재원의 확보 등 재정운용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세입관리에 지속적인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 「2021~2025년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안」에 대한 검토

-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안(이하 ‘재정계획’이라 함)은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통한 지방교육재정의 계획적인 운용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예산과 연계하여 수립하는 다년도 계획입니다.⁴⁾

4) 「지방재정법」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표-4] 중기지방교육재정 규모

(단위: 백만원, %)

구 분	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연평균 증가율
계	67,651,813	12,465,605	12,992,817	13,557,872	14,022,629	14,612,890	4.1
교특회계	62,956,095	11,678,529	12,119,553	12,534,861	12,988,136	13,635,016	3.9
기 금	4,695,718	787,076	873,264	1,023,011	1,034,493	977,874	5.6

○ 금번 계획기간 중 중기지방교육재정 총규모는 67조 6,518억 1천 3백 만원으로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상승과 학교운영비(사립학교 포함) 증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추진 등 의무지출 경비가 연 평균 3.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 중기 재정수입 전망

○ 정부는 2021년에 글로벌 경제 및 반도체 업황의 회복과 백신보급의 확대 등을 바탕으로 경기 및 고용 개선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2022년 이후에는 코로나19 영향 완화 등에 따른 경제활동이 점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이하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계획수립 절차 등에 따라 그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
2. 중장기 재정여건과 재정규모전망
3. 관련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 중 해당 사항
4. 분야별 자원배분계획
5. 예산과 기금별 운용방향
6. 의무지출(법령 등에 따라 지출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지출 및 이가지출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하 같다)의 증가율 및 산출내역과 재량지출(의무지출 외의 지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증가율에 대한 분야별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7. 제59조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의 전망과 근거
8. 통합재정수지[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재정통계로서 순(純) 수입에서 순 지출을 뺀 금액을 말한다] 전망과 관리방안
9. 투자심사와 지방채 발행 대상사업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⑩ (생략)

차 정상화되면서 내수 회복세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⁵⁾.

- 다만, 코로나 19 재확산 우려로 인해 내수 회복세가 둔화될 가능성과 포스트코로나 이후 디지털·저탄소 경제 정책이 전세계적으로 본격화되는 등 대내·외 경제의 구조적 대전환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⁶⁾.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예상보다 빠른 경제회복으로 국세수입은 당초 계획(2020년~2024년 계획)보다 개선된 연평균 5.1%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금번 재정계획에서 중기 이전수입 전망을 연평균 4.1% 증가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특히 이전수입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중앙정부이전수입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4.3%)보다 높은 연평균 4.9%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이는 국가 재정계획 상 재정수입의 연평균 증가율 4.7% 및 국세수입 연평균 증가율 5.1%와 비슷한 규모의 증가율로,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교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경기회복 전망에 따른 내국세 수입 증가로 계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을 반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표-5] 중기 이전수입 전망

(단위: 백만원, %)

구 분	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34	2025년	연평균 증가율
계	53,646,436	9,847,913	10,243,818	10,818,105	11,219,471	11,517,129	4.0
중앙정부이전수입	32,947,083	6,015,270	6,234,300	6,652,153	6,934,222	7,111,138	4.3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20,650,203	3,822,813	3,999,688	4,156,122	4,275,419	4,396,161	3.6
기타(민간)이전수입	49,150	9,830	9,830	9,830	9,830	9,830	0.0

5) 기획재정부, '2022년 국세수입 예산안', 2021.8.27.자 보도자료 참고

- 2022년 국세수입은 금년 예산(2차 추경예산 314.3조원) 대비 +24.4조원(+7.8%) 증가한 338.6조원으로 전망

6)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내용」(기획재정부, 2021.8) 참고.

- 더욱이 지난 추경 당시 정부는 상반기 초과세수(31조 5천억원)의 발생으로 인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7,395억 1천 4백만원 증액한바 있으며, 하반기에도 약 19조원의 초과세수가 발생⁷⁾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바, 내국세와 연동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규모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기획재정부와 주요 경제전망기관들이 지난 6월부터 10월 사이 발표한 우리나라의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살펴보면, 코로나19 백신접종확대, 민간소비 개선, 정부소득지원 정책 등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장기화 및 재확산 가능성에 따른 고용사정 악화,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에 따라 올해 전망치 보다 평균 1% 정도 하향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내국세와 연동되도록 설계되어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의 이 전수입도 이러한 대내·외 위험요인들에 의한 경제전망에 영향을 받아 불안정성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바, 교육청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재정 운용의 안정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표-6] 2022년도 국내 경제성장률⁸⁾ 기관별 전망(2021.10 기준)

구 분	전망시점	2021년(p)	2022년(p)
정부	2021년 6월 28일	4.20%	3.00%
한국은행	2021년 08월 26일	4.00%	3.00%
국회에산정책처	2021년 09월 30일	2.30%	3.00%
KDI	2021년 05월 13일	3.80%	3.00%
IMF	2021년10월 12일	4.30%	2.90%
OECD	2021년 09월 21일	4.00%	3.40%
현대경제연구원	2021년 10월 08일	3.80%	2.80%
LG경제연구원	2021년 04월 15일	4.00%	2.50%
평 균		3.80%	2.95%

7) 기획재정부, '금년 초과세수는 현 시점에서 추경예산 대비 약 19조원 수준으로 전망됩니다', 2021.11.16.자 보도자료 참조

8) 경제성장률(Economic growth rate)이란 일정기간 동안 각 경제활동부문이 만들어낸 부가가치가 전년에 비하여 얼마나 증가하였는가를 보기 위한 지표로서 한 나라의 경제가 이룩한 경제의 성과를 측정하는 중요한 척도임.

2) 중기 재정지출 전망

- 중기 재정지출 중 경상지출은 공·사립 교직원과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 및 학교와 기관의 행정운영경비의 증가와 기금 운용에 따른 보전지출 등의 증가로 인해 지난년도 계획된 재정계획(3.4%)보다 상향된 연평균 4.7%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사업비 지출은 학령인구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방과후학교운영지원, 원격교육지원, 학생복지 지원, 학교교육환경개선 등의 증가와 함께 신청사 연수원 기금의 완료로 연평균 2.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계획기간 별 총 재정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지난 재정계획(3.2%)보다 높은 4.1% 수준의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표-7] 중기 성질별 지출 전망

(단위: 백만원, %)

구 분	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연평균 증가율
계	67,651,813	12,465,605	12,992,817	13,557,872	14,022,629	14,612,890	4.1
경 상 지 출	46,328,088	8,553,579	8,910,185	9,092,000	9,477,526	10,294,798	4.7
교육비특별회계	42,922,338	8,042,386	8,199,873	8,444,023	8,857,199	9,378,857	3.9
기 금	3,405,750	511,193	710,312	647,977	620,327	915,941	15.7
사 업 비	21,323,725	3,912,026	4,082,632	4,465,872	4,545,103	4,318,092	2.5
교육비특별회계	20,033,757	3,636,143	3,919,680	4,090,838	4,130,937	4,256,159	4.0
기 금	1,289,968	275,883	162,952	375,034	414,166	61,933	△31.2

- 구체적으로 재정지출 중 의무지출과⁹⁾ 재량지출을 살펴보면, 계획기간 중 의무지출은 학령인구감소로 인한 누리과정교육비(△6.9%) 및 국고

9) 의무지출은 법령 등에 따라 지출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지출 및 이자지출을 말함.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9조(의무지출의 범위) 법 제33조제3항제6호에 따른 의무지출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지방세징수법」 제17조에 따른 징수교부금, 법 제29조 및 제29조의2에 따른 조정교부금
2. 국고보조사업 또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시·도가 시·군 및 자치구에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국고보조금 및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시·도가 시·군 및 자치구에 교부하는 보조금을 포함한다)
3. 지방채 및 차입금 등에 대한 이자지출
4. 「유아교육법」 제2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4조제3항·제5항에 따른 공통의 교육·보육과정 지원비
5.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지출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경비

보조사업비(△15.5%)의 감소와 이자지출(△5.2)의 감소 등에도 불구하고 급식지원(7.5%), 국고 및 지자체 지원재원에 대한 반환금(10%) 및 공사립 학교기본운영비 증가로 인해 연평균 3.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재량지출은 유아 및 초·중등 교육환경개선 사업 등의 증가로 인해 연평균 4.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표-8] 중기 재정지출 전망

(단위: 백만원, %)

구 분	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연평균증가율
계	67,651,813	12,465,605	12,992,817	13,557,872	14,022,629	14,612,890	4.1
의 무 지 출	49,236,947	9,240,464	9,433,338	9,683,729	10,161,989	10,717,427	3.8
재 량 지 출	18,414,866	3,225,141	3,559,479	3,874,143	3,860,640	3,895,463	4.8

- 다만 계획기간 중 의무지출은 전체 재정지출 대비 약 72% 수준을 계속해서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바, 이는 재정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의 재량권이 제한된다는 점에서 교육청은 한정된 재원을 적절히 분배한 예산편성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 성과계획서(안)에 대한 검토

-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의 성과계획안」(이하 ‘성과계획안’ 이라 함)은 재정사업에 대한 기관의 전략목표와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5조¹⁰⁾ 및 제44조의2¹¹⁾와 「지방

10) 제5조(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할 수 있다.
 ④ 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11) 제44조의2(예산안의 첨부서류) ①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다만, 수정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 6. (생략)
 7. 성인지 예산서

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에 따라 제출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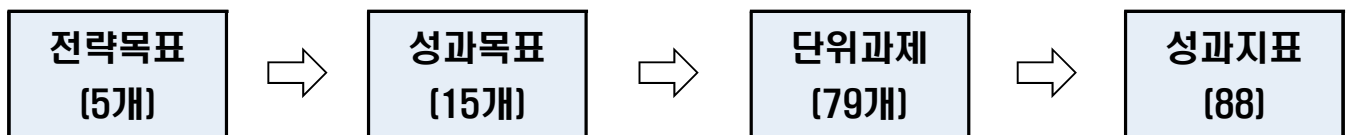
- 금번 성과계획안은 2022년도 110개 세부사업 중 90개 세부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계획이며, 성과관리 대상 사업의 예산은 예산안 총액 대비 26.7%인 2조 8,298억 3천만원으로, 2021년도(2조 3,853억 7천 6백만원) 보다 4,444억 5천 4백만원이 감소된 수준입니다.¹²⁾

[표-9] 2022년 성과계획 대상 사업 수 예산액

(단위: 건, 백만원)

사업 수			성과계획 대상 사업 예산액		
총 세부사업 수	성과계획 대상 세부사업 수	성과계획 비대상 사업수	2022년도	2021년도	증감
110	90	20	2,829,830,241	2,385,375,901	444,454,334

-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지침」에 따라 성과계획서에서 5개 전략목표와 15개 성과목표 및 79개 단위과제, 이에 따른 88개의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의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지침」(교육부, 2021.8)에 따르면, 전략 목표는 시·도교육청의 임무와 비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추진해야 할 정책방향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반적이거나 추상적 표현이 아닌 구체적인 내용으로 작성하도록 되어

8. 성과계획서
9.~14. (생략)

12)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지침」(교육부, 2018.9)은 교육비특별회계 모든 재정사업을 성과관리 대상사업으로 하면서도 ① 법령이나 업무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대외공개가 곤란한 사항, ② 행정운영경비(인력운영비, 기본경비), ③ 재무활동(지방교육채, 민간투자사업상환, 일시차입금관리, 기금적립), ④ 예비비 및 기타(예비비, 제지출금, 내부유보금), ⑤ 세부사업 학교운영비지원, 인건비재정결함지원, 운영비재정결함지원 등 사업경비가 아닌 세출예산사업을 성과관리 대상사업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명시함.

있으며, 전략목표의 수는 시·도교육청 전체의 성과관리가 가능하도록 업무 전반을 포함할 수 있도록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 또한 성과목표는 전략목표 또는 단위관제 간 연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가급적 업무의 ‘최종적인’ 효과가 파악될 수 있어야 하며, 특히 장기목표 달성을 위한 단기간(연간)의 성과가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 반면, 단위과제는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 예산체계상 세부 사업과 유사한 개념으로 성과관리체계와 예산사업 연계 시 단위사업 대 세부사업을 1:1 또는 1:N이 되도록 설정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성과지표는 성과목표 및 단위과제가 추구하는 목적 달성여부를 측정하는 도구로서 성과목표별로 성과지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야 하며, 이때 성과지표는 성과목표에 대해 대표성과 포괄성을 유지하도록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 이와 같이 교육부의 성과관리계획서 작성 지침에 따르면 성과계획서의 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과제, 성과지표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며, 특히 성과목표는 단기간(연간)의 성과를 파악할 수 있고, 업무의 최종적인 효과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야 하는바, 이는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가 모호할 경우, 궁극적으로 성과지표가 모호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 그러나 현재 교육청 성과계획안의 성과목표를 살펴보면, ‘배움과 성장의 교실혁명’, ‘교육의 공공성 확립’, ‘모든 아이들의 성장 보장’, ‘평화감수성과 민주시민성 함양’, ‘몸과 마음의 건강한 성장 지원’, ‘학부모,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더 넓은 학교’ 등 성과목표 자체가 단기간에 성과를 파악할 수 있거나 업무의 최종적인 효과를 파악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장기간에 걸쳐 교육청의 중·장기 정책을 통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할 비전, 방향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는 바, 이와 같은 성

과목표의 설정은 상당히 포괄적이고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표-10] 성과목표 및 단위과제에 따른 성과지표

전략목표	성과목표
I. 미래를 준비하는 혁신교육	I-1. 배움과 성장의 교실혁명 I-2. 미래교실에서 자라나는 창의융합인재 I-3. 진로개척 역량 함양
II. 모두의 가능성을 여는 책임교육	II-1. 교육의 공공성 확립 II-2. 모든 아이들의 성장 보장 II-3.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III. 평화와 공존의 민주시민교육	III-1. 평화감수성과 민주시민성 함양 III-2. 생명과 권리를 존중하는 교육 III-3. 자율과 책임의 자치 경험 확대
IV.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IV-1. 안전을 지켜주는 든든한 학교 IV-2. 몸과 마음의 건강한 성장 지원 IV-3. 미래형 교육환경과 공간 혁신
V. 참여와 소통의 교육자치	V-1. 학교자율운영 적극 지원 V-2. 학부모,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더 넓은 학교 V-3. 현장 중심의 교육행정 조직과 문화

○ 더욱이 이와 같은 모호한 수준에서 성과목표가 수립되다보니, 실제 정량 지표로 실적을 제시해야하는 성과지표까지 성과목표의 목적을 대표성 있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¹³⁾, 궁극적으로 성과지표의 적절성, 지표 종류¹⁴⁾의 일관성 등의 문제가 개선되지 못한 채 관례적으로 성과계획서가 작성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¹⁵⁾.

13) 18개의 정량지표로서의 성과지표가 '배움과 성장의 교실혁명'이라는 성과목표를 얼마나 포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지 불분명함.

14) [내용에 따른 지표 종류]

구분	개 념	특 성
투입 지표	예산인력 등 투입물의 양을 나타내는 지표 (예 : ○○교육 예산 집행률)	예산집행과 사업 집행과정상의 문제점을 발견하는데 도움
과정 지표	사업 진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산출물의 양을 나타내는 지표 (예 : ○○훈련 교육별 진도율)	사업 진도 등 사업추진 정도를 중간 점검하는데 도움
산출 지표	사업완료 후 나타나는 1차적 산출물을 나타내는 지표 (예 : ○○훈련 교육 수료자수)	투입에 비례하여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였는가를 평가하는데 도움
결과 지표	1차적 산출물을 통해 나타나는 궁극적인 사업의 효과, 정책이 미치는 영향력을 나타내는 지표 (예 : ○○훈련 수료자 취업률/소득증가율)	사업이 의도한 최종목표의 달성정도에 따른 영향과 효과를 측정하는데 도움

[표-11] 성과목표(I-1)에 따른 성과지표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I. 미래를 준비하는 혁신교육	I-1. 배움과 성장의 교실혁명	① 자유학년제 연수실적 ② 유치원컨설팅장학 만족도 ③ 초1~2학년 안성맞춤 교육과정 지원 네트워크 체제 구축 ④ 초·6학년 창의공감 교육과정 지원 『우리가 꿈꾸는 교실』 운영비율 ⑤ 일반고 교육과정 편성·운영 다양화·특성화 학교 비율 ⑥ 서울형혁신학교 확대 운영 ⑦ 학교안교원학습 공동체 참여율 ⑧ 목적사업 학교자율운영제 참여율 ⑨ 중학교 교사별 과정중심 평가 교원 연수 이수율 ⑩ 수업·평가나눔 교사단 학습공동체 ⑪ 학습연구년 운영 만족도 ⑫ 시교실 구축률 ⑬ 과학 탐구·실험 수업시수 비율 ⑭ 창의융합형 과학체험프로그램 참가자 만족도 제고 ⑮ 독서토론글쓰기 교육 교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 참여 인원 ⑯ 정보화 전문연수 운영과정 증가율 ⑰ 원격수업 지원 플랫폼 사용자 증가율 ⑱ 지역연계 생태전환교육 운영교 비율

○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현재의 성과목표를 기준으로 성과지표를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다면,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 등 목표 자체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도 필요한바,

서울시교육청은 성과계획서 작성을 관행적으로 안일하게 시행할 것이 아니라 성과계획서 평가위원회 등을 구성·운영하여 성과목표 설정 등 성과계획서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예산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제도개선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15)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14~15p 참고.

라. 성인지 예산안에 대한 검토

- 성인지 예산제도는 예산이 여성·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여성·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이를 위해 성인지 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36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에¹⁶⁾ 따라 2012회계연도부터 예산이 여성·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의 분석 보고서(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여 예산안 첨부서류로 의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되었으며, 교육청은 2013회계연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표-12] 사업분류별 성인지 예산 총괄표

(단위: 개, 백만원)

사업분류	사업개수	예산액(A)	전년도 예산액(B)	비교 증감	
				(A-B)	증감률
합계	36개	166,302	149,397	16,904	11.3%
1.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	12개	70,485	62,999	7,486	11.9%
2. 성별영향평가사업	4개	2,137	0	2,137	순증
3. 매년 교육부장관이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	17개	90,930	85,115	5,815	6.8%
4. 시도교육청이 자체 선정하여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	3개	2,750	1,283	1,467	114.4%

16) 「지방재정법」

제36조의2(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 예산서"(性認知 豫算書)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른 예산안에는 성인지 예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③ 그 밖에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0조의2(성인지 예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① 법 제36조의2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이하 "성인지 예산서"(性認知 豫算書)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인지 예산의 개요 및 규모
2. 성인지 예산의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및 성별 수혜분석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성인지 예산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작성기준 및 방식 등에 따라 작성한다.

- 금번 성인지 예산안은 36개 사업에 2021년 보다 169억 4백만원이 증가한 1,663억 2백만원의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 그러나 세부적으로 사업을 분류하여 보면 「양성평등기본법」 제7조에 17)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수립하여 추진하는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과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업이 대부분이고, 자체사업은 ‘오디세이학교운영(성인지 예산안 87쪽)’ 과 ‘스쿨미투예방및학교회복지원(성인지 예산안 147쪽)’, ‘주민참여예산운영(성인지 예산안 179쪽)’ 등 3개 사업에 불과합니다.
- 이처럼 교육청의 성인지 예산안은 여전히 자체사업 수가 적다는 점에서 향후 교육감 공약사업 등 교육청의 특수성이 반영된 자체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표-13] 성인지 예산안 사업별 내역

(단위: 백만원)

연번	사업명	사업분류	예산액(A)	전년도 예산액(B)	비교 증감	
					(A-B)	증감률(%)
합계 (36 개)			166,302	149,398	16,904	11.3
1	중등교원연수지원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2,211	1,943	268	13.8
2	교장및기관장임용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81	82	△1	△1.2
3	인사관리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2,029	1,543	486	31.5
4	지방공무원인사운영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859	774	85	11.0
5	에듀케어자원봉사단운영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2,601	2,501	100	4.0
6	방과후활동지원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4,934	4,702	232	4.9

17) 「양성평등기본법」

제7조(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방안
4.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19조에 따른 국가성평등지표를 활용하여야 한다.

⑤ 기본계획은 제11조에 따른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⑥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특수교육관련서비스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17,742	13,579	4,163	30.7
8	영재교육연수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52	36	16	44.4
9	맞춤형취업기능강화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628	678	△50	△7.4
10	문화예술지원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5,353	5,540	△187	△3.4
11	초등돌봄교실운영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33,109	31,038	2,071	6.7
12	일반고교생직업교육과정운영지원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884	582	302	51.9
13	인공지능기반융합교육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478	-	478	순증
14	교육공무직노무관리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567	-	567	순증
15	인권교육활성화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594	-	594	순증
16	학부모지원센터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498	-	498	순증
17	교원노사관리	교육부지정사업	449	219	230	105.0
18	기초학력향상지원	교육부지정사업	8,440	10,687	△2,247	△21.0
19	중등기초학력향상지원	교육부지정사업	2,813	6,281	△3,468	△55.2
20	초등수석교사제운영	교육부지정사업	52	73	△21	△28.8
21	중등수석교사제운영	교육부지정사업	741	677	64	9.5
22	영어회화전문강사배치	교육부지정사업	10,590	11,683	△1,093	△9.4
23	영어체험교육지원	교육부지정사업	1,066	1,020	46	4.5
24	초등스포츠강사인건비지원	교육부지정사업	12,024	9,769	2,255	23.1
25	선진운동부육성	교육부지정사업	21,093	1,841	19,252	1045.7
26	청소년단체활동지원	교육부지정사업	233	498	△265	△53.2
27	학교안전망구축	교육부지정사업	1,430	1,529	△99	△6.5
28	맞춤식진로교육	교육부지정사업	5,339	4,419	920	20.8
29	교육복지우선지원학교지원	교육부지정사업	11,007	19,760	△8,753	△44.3
30	화장실개선(전면)	교육부지정사업	14,685	15,696	△1,011	△6.4
31	서울평생교육정보센터운영	교육부지정사업	182	185	△ 3	△1.6
32	독서문화및교육지원사업	교육부지정사업	719	747	△28	△3.7
33	학교운영위원회	교육부지정사업	69	33	36	109.1
34	오디세이학교운영	자체선정사업	849	649	200	30.8
35	스쿨미투예방및학교회복지원	자체선정사업	499	551	△52	△9.4
36	주민참여예산운영	자체선정사업	1,402	83	1,319	1589.2

○ 한편, 성인지 예산제도는 특정 사업예산이 특정 성별에 유리하도록 집중되는 편중현상을 방지하여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균형 있는 예산효과가 나타나도록 하기 위함인 바, 정책 효과가 특정 성별에 집중되는 예산 편성은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 그러나 금번 성인지예산안의 ‘서울평생교육정보센터운영’ 사업은 평생교육봉사단의 참여를 통해 학습동아리별 교육 및 활동지원 등을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에 대한 사업 대상자 및 수혜자가 100% 여성입니다.
- 더욱이 해당 사업은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의 보장(정책분야 목표)’ 을 위해 ‘고용기회의 평등성을 제고(정책과제)’ 하는 성인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관례적으로 ‘여성 비율 확대’ 를 성과목표로 설정하고 ‘여성 비율’ 을 성과지표로 하고 있습니다.
- 이처럼 해당 사업은 여성의 참여 비율만을 지표로 삼고 있는바, 수년째 성과 목표치를 달성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 따라서 동 사업은 성인지 예산제도의 취지를 고려했을 때 무조건적인 여성 참여비율을 높이는 것이 아닌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않는 예산편성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인바, 동 사업의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는 남성의 참여 비율로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한편 ‘중등교원연수지원’, ‘교장및기관장임용’, ‘인사관리’, ‘지방공무원인사운영’ 사업 등에서 성별격차가 발생하는 것은 기존 교직원의 정·현원 자체 성별 구성 비율의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측면이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교육부 및 교육청의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또한 ‘오디세이학교운영’, ‘영어체험 교육지원’, ‘초등 스포츠강사 지원사업’, ‘학교안전망 구축’ 등 4개 사업은 2019년부터 계속해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목표치는 동일하거나 상향되어 책정되었는바,

서울시교육청은 개별사업 계획 수립 시 전년도의 사업성과를 보다 객관적으로 분석, 검토하여 예산 및 성과 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표-14] 성인지 성과목표달성도 100%미만 사업목록

사업명	성과목표	2022년 목표치	2021년 목표치	2020			2019		
				목표 (A)	실적 (B)	달성도 (B/A)	목표 (A)	실적 (B)	달성도 (B/A)
오디세이학교운영	학교 재학생의 균등한 성비율 유지	50.0%	50.7%	50.0	42.7	85.4	50.0	49.3	98.6
영어체험교육지원	단기 집중 영어교육 프로그램 여학생 참여율 제고	50.0%	48.9%	48.9	48.8	99.8	50.0	48.7	97.4
초등스포츠강사 인건비지원	여성스포츠강사 확대	50.0%	30.7%	32.2	28.6	88.9	32.2	29.8	92.5
학교안전망구축	배움터지킴이 여성비율 확대	6.3%	4.7%	4.5	4.4	97.8	4.8	4.3	89.6

- 아울러 교육청은 교육사업의 제반여건과 지역적 특수성, 선정사업의 성평등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성과목표와 성과지표가 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의 성인지 사업 선정 및 측정산식의 불합리성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개선안을 제시하는 등 재정운영 측면에서 성인지 예산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를 견지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¹⁸⁾

1) 이전수입

- 이전수입은 중앙정부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기타이전수입으로 구성되며, 지방세에 대한 징수권이 없는 지방교육재정의 특성상 이전수입이 서울시교육청의 주요 세입원입니다.
- 금번 세입예산 중 이전수입의 총 규모는 10조 1,340억 1천 1백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9조 3,631억 7천 2백만원) 대비 7,708억 3천 9백만원(8.2%)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표-15] 지방교육재정의 세입 구성

구 분		내 용
이전수입	중앙정부 이전수입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고보조금 등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법정전입금, 비법정전입금 등
	기타 이전수입	민간 이전수입 등
자체수입		입학금·수업료, 자산수입, 이자수입 등 (2021년도부터는 고교 무상교육 실시에 따라 입학금·수업료 없음)
기 타		지방교육채, 순세계잉여금, 전년도 이월금 등

* 고등학교 무상교육 관련 증액교부금과 유아교육비·보육료 지원 포함

[표-16] 이전수입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년도 예산(안)		2021년도 본예산		증 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중앙정부 이전수입	6,066,512	57.2	5,748,655	59.0	317,857	5.5
지방자치 단체이전 수입	4,058,767	38.4	3,605,550	37.0	453,217	12.6
기타이전 수입	8,732	0.1	8,967	0.1	△235	△2.6
합 계	10,134,011	95.7	9,363,172	96.1	771,074	8.2

18) 지방교육재정 세입예산 구조는 [붙임1] 참고.

가) 중앙정부이전수입(예산안 29쪽~46쪽, 사업별 설명자료 5쪽~16쪽)

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금번 예산안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5조 5,208억 9백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5조 1,898억 4천 6백만원) 보다 3,309억 6천 3백만원(6.4%)이 증가하였음.

[표-17]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종류별 교부 기준

종류와 자원		교부 기준
보통교부금 (내국세의 20.79%의 97% + 교육세 - 유아교육지원회계 전출분)		시·도교육청별로 총액을 교부하고 각 시·도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인건비, 시설비 등에 사용하거나 학교회계로 전출
특별교부금 (내국세의 20.79%의 3%)	국가시책(60%)	전국에 걸쳐 시행되는 교육관련 국가시책으로 국가시책사업심의회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이 결정
	지역현안(30%)	기준재정수요액 산정방법으로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지역교육현안수요 발생 시 교부
	재난안전관리(10%)	재해로 인한 특별 재정수요 발생 시 교부

[표-18]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년도		2021년도		증 감		재원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비율	일반	목적
보 통 교 부 금	5,251,974	49.6	4,933,216	50.6	318,758	6.5	5,251,974	0
특 별 교 부 금	106,518	1.0	79,920	0.8	26,598	33.3	0	106,518
증 액 교 부 금	162,317	1.5	176,710	1.8	△14,393	△8.1	162,317	0
계	5,520,809	52.1	5,189,846	53.2	330,963	6.4	5,414,291	106,518

㉠ 보통교부금

- 중앙정부이전수입 중 보통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 및 제5조에¹⁹⁾ 따라 지역 간 균형 있는 교육 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19)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자원) ① 국가가 제1조의 목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부금(이하 "교부금"이라 한다)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나눈다.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경영하는데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는 제도로서,

정부(교육부)가 “내국세의 20.79%의 97% 및 교육세 일부” 를 재원으로 하여 각 시·도교육청의 기준재정수입액이²⁰⁾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할 경우 그 미달액을 총액으로 교부하는 법정교부금입니다.²¹⁾

[표-19] 기준재정수요액 측정항목

기본 측정항목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4조[별표 1])		자체노력 수요 측정항목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4조[별표 2])	
측정항목	측정단위	측정항목	측정단위
1. 교직원인건비	교원수, 교원 증원 수 등	1. 학교·학급 통폐합 및 신설 대체 이전 지원	학교 수, 학생 수
2. 학교운영비	학교, 학급, 학생 수 등	2. 학교신설 민관협력 확대	학교별 신설비·증설비 절감액

② 교부금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해당 연도의 내국세(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稅目)의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액의 1만분의 2,079

2. 해당 연도의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세입액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5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

③ 보통교부금의 재원은 제2항제2호에 따른 금액에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97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특별교부금의 재원은 제2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④ 국가는 지방교육재정상 부득이한 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예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부금 외에 따로 증액교부할 수 있다.

제5조(보통교부금의 교부) ① 교육부장관은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그 부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보통교부금을 총액으로 교부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통교부금을 교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교부의 결정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보통교부금의 산정 기초, 지방자치단체별 명세 및 관련 자료를 작성하여 각 시·도 교육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0) 지방자치단체 법정전입금(지방교육세, 시·도세, 담배소비세), 시·도의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학교용지부담금과 고교무상교육을 위한 전입금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을 내용으로 함.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지방소비세액의 안분기준 등) ① 법 제71조에 따라 납입된 지방소비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안분한다. 다만, 제2호라목에 따라 산출한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이 조(제3항은 제외한다), 제76조 및 제77조에서 "시·도"라 한다)의 안분액 합계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은 사회복지수요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안분액을 달리 산출할 수 있다.

2. 법 제71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안분액: 다음 각 목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보전에 충당하는 안분액 계산식

해당 시·도 교육청의 안분액=(A×B)×C-D

A: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 × 6%

B: 법 제71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감소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액의 비율(20.27%)

C: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시·도 교육청의 보통교부금 배분비율

D: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에 충당되는 부분에서 공제되어 해당 시·도에 충당되는 안분액

세목별 조세체계는 [붙임2] 참고.

21) 보통교부금은 시·도별로 총액을 배분하고 시·도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포괄적 교부금임.

3. 교육행정비	학교, 학생 수 및 기준 교직원 수 등	4. 외부로부터의 교육투자 유치	외부 유치재원 비율 및 증가율
4. 교육복지 지원비	학교, 수급자 수 등	7. 재정집행 효율화 지원	이월률 및 불용률, 상반기 예산 집행 비율, 순세계잉여금 예산편성 비율
5. 교육기관 등 시설비	건축연면적, 토지면적 등		
6. 유아교육비	유아, 교원, 유치원 수 등		
7. 방과후학교 사업비	학급, 수급자 수, 교실 수 등		
8. 재정결함 보전	원리금상환액, 임대형 민자사업 임대료 등		

- 금번 예산안의 보통교부금은 2021년도 보다 3,187억 5천 8백만원이 증가한 5조 2,519억 7천 4백만이 편성되었는바²²⁾, 이는 2021년의 경우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시장경제의 불확실성 증대로 인해 내국세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전보다 감액 교부하였으나, 당초 정부 예측과 달리 2021년 추가 세수 등으로 인해 재원이 약 35조 추가 확보되는 등 경제여건이 개선됨에 따른 것입니다.
- 더욱이 2022년에 현재 내국세의 20.79%로 규정되어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 비율을 20.94%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조례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이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어 앞으로 교부금 규모는 확대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 다만 보통교부금은 내국세와 연동되어 확정금액에 의한 교부가 아닌 규모의 변동이 있으므로, 향후 국내 경제가 회복되고 안정적으로 유지될 경우에는 예산을 통한 교육사업 운용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2021년도와 같이 예측과 실제 세수에 있어 큰 차이가 나타날 경우 안정적 사업운영에 있어 큰 어려움이 발생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더욱이 매년 교부금은 증가되고 있으나, 교육청의 재량지출의 재원이 되는 보통교부금의 재원 비중은 점차 축소되고 있어 새로운 교육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기는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22) '2022년도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예정 교부통지',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6149(2021.10.8.)

- 또한 학생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내국세의 규모에 따라 교부금 규모가 결정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구조상, 한정된 정부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용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 이전수입의 규모가 변동될 가능성 또한 상존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가변적일 수 있는 세입여건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교육재정안정화 기금의 적극적 운용을 통한 재정수입의 불균형을 조정하고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표-20] 보통교부금 예정 교부통지 내역

(단위: 천원)

구분	측정항목		
기준재정 수요액 (B)	합 계		10,131,377,451
	1.교직원인건비		6,623,121,491
	교원		5,052,078,100
	교육전문직원		67,372,102
	교육공무원이 아닌 공무원 및 사무직원		661,566,996
	공무원 및 사무직원 외의 직원		586,315,137
	교원 명예퇴직		263,289,542
	교원 명예퇴직('20년 정산분)		△11,669,870
	교육전문직원 명예퇴직		242,244
	교육공무원이 아닌 공무원 및 사무직원 명예퇴직		3,927,240
	2.학교운영비		1,820,262,928
	가. 학교경비		989,439,530
	나. 학급경비		260,817,410
	다. 학생경비		510,613,988
	마. 교과교실 운영비(시설비 포함)		30,390,000
	사. 추가운영비		29,002,000
	3.교육행정비		128,185,236
	가. 기관운영비		97,933,614
	나. 지방선거경비		30,251,622
	4.교육복지지원비		211,083,815
	가. 지역 간 균형교육비		3,390,548
나. 계층 간 균형교육비		207,693,267	
5.교육기관 등 시설비		872,157,166	
가. 학교 교육환경개선비		809,115,000	

	나. 공립학교 신설·이전·증설비	39,446,027
	다. 공립 유치원 신설·증설비	4,323,318
	라. 학교 통폐합에 따른 신설·이전·개축·증설·대수선비	-
	바. 사립학교 이전 건축비 부족분 지원	-
	사. 학교기숙사 시설비	-
	아. 청사 신설 이전비	19,272,821
	6.유아교육비	79,660,055
	가. 유아교육비·보육료 지원	-
	나. 유치원 교원 인건비 보조	44,733,300
	다. 유치원 교육역량 지원비	34,926,755
	7.방과후학교사업비	92,381,444
	가. 방과후학교 사업 지원	13,370,323
	나. 자유수강권 지원	23,833,218
	다. 초등 돌봄 지원(시설비 포함)	55,177,903
	8.고교무상교육지원비	175,890,137
	가. 고교 입학금·수업료	130,945,911
	나. 학교운영지원비	36,217,463
	다. 교과서대금	8,726,763
	9.재정결함보전	87,357,442
	가. 지방교육채 상환	57,382,442
	나. 민자사업 지급금	29,975,000
	※ 자체노력수요	41,277,737
	학교·학급 통폐합 및 신설대체 이전 지원	-
	학교신설 민관협력 확대	36,693,566
	외부로부터의 교육투자 유치	3,584,171
	재정집행효율화지원(상반기 예산집행 비율)	1,000,000
기준재정 수입액 (C)	합 계	4,880,403,762
	1.법정전입금	4,603,143,224
	지방교육세	2,210,953,006
	시도세	2,122,431,115
	담배소비세	238,041,517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정산분)	△4,775,414
	균특회계 시도전환 사업 보전분	36,180,000
	균특회계 시도전환 사업 보전분 21년 정정교부	313,000
	2.학교용지부담금	-
	3.고교무상교육증액교부금	162,317,000
	4.고교무상교육전입금	13,573,137
	5.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	101,370,401
	감사결과 반영(E)	
정정교부액(F)		1,000,000
교부할 금액(G=A+B-C+D+E+F)		5,251,973,689

(2022년도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예정 교부통지,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6149(2021.10.8.))

㉔ 특별교부금

- 다음으로 특별교부금은 보통교부금과 달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 3조 및 제5조의2에²³⁾ 따라 내국세 총액의 20.79%의 100분의 3의 범위 안에서 국가지책 60%, 지역현안 30%, 재난안전과리 10%의 재원을 편성해 교부하는 법정교부금입니다.
- 금번 예산안의 특별교부금은 전년도 116개 사업에서 43개 사업이 늘어난 159개 사업에 1,065억 1천 8백만원이 편성되었는바, 이는 2021년도 799억 2천만원 보다 265억 9천 8백만원(33.3%)이 증가한 규모로 편성된 것입니다.
- 특별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2에²⁴⁾ 따라 교육부가 사업과 예산 규모를 결정함으로써 교육청 및 학교의 재정운용 부담을 가중

23) 제5조의2(특별교부금의 교부)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특별교부금을 교부한다.

1. 「지방재정법」 제58조에 따라 전국에 걸쳐 시행하는 교육 관련 국가지책사업으로 따로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여야 할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지방교육행정 및 지방교육재정의 운용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할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60
2.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 파악할 수 없는 특별한 지역교육현안에 대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30
3. 보통교부금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생기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하였을 때 또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10

② ~ ⑥(생략)

2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2(특별교부금의 교부)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특별교부금을 교부한다.

1. 「지방재정법」 제58조에 따라 전국에 걸쳐 시행하는 교육 관련 국가지책사업으로 따로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여야 할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지방교육행정 및 지방교육재정의 운용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할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60
2.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 파악할 수 없는 특별한 지역교육현안에 대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30
3. 보통교부금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생기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하였을 때 또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10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이 특별교부금을 신청하면 그 내용을 심사한 후 교부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없어도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특별교부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특별교부금의 사용에 대해서는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할 수 있다.

④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조건이나 용도를 변경하여 특별교부금을 사용하려면 미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교육부장관은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른 조건이나 용도를 위반하여 특별교부금을 사용하거나 2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을 명하거나 다음에 교부할 특별교부금에서 해당 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⑥ 제1항제1호에 따른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과 특별교부금의 교부시기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켜왔으며, 학교의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등 교육현장의 업무 피로감을 누적시키고 사업 추진상의 어려움을 발생시켜 왔습니다.

- 특히 특별교부금은 회계연도 중 수시로 교부되어 사업예측이 어렵고 교육청의 정책방향과 중복되는 등 업무 비효율을 초래하기도 하였으며,²⁵⁾ 교육감이 조건이나 용도를 변경하여 특별교부금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사용하거나 2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교육부 장관이 반환을 명하거나 다음에 교부할 특별교부금에서 이를 감액할 수 있어 교육청은 불요불급하더라도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이러한 특별교부금 제도의 본질적 한계로 인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고자 교육청은 2018년부터 「외부재원 및 교육지원청 세출예산 효율화」 계획(2017.9.26)을 수립하여 매년 반복적으로 교부되는 특별교부금 교부사업을 본예산에 반영함으로써 학교 예산 편성시 특별교부금 사업에 대한 예측을 용이하게 하여 학교의 재정운용 자율성을 확대하여 왔습니다²⁶⁾.

[표-21] 2019~2022 특별교부금 교부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세입결산액(예산액)	11,836,595	100.0%	10,556,352	100.0%	9,741,994	100.0%	10,580,269	100.0
교부합계	226,262	1.9%	187,509	1.8%	79,920	0.8	106,518	1.0
국가시책사업	121,542	1.0%	125,528	1.2	79,920	0.8	106,518	1.0

2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제5조(특별교부금의 교부절차 및 교부시기) ①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5조의2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교부금을 신청하는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예상되는 투자효과가 기술된 사업계획서 그 밖에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특별교부금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기에 교부한다. 다만, 제1호의 시책사업수요에 대한 특별교부금의 교부시기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1. 시책사업수요 : 매년 1월 31일
2. 지역교육현안수요 : 당해 지역 교육현안 수요가 발생한 때
3. 재해대책수요 : 당해 재해대책수요가 발생한 때

26) 특별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에 따라 내국세 총액의 20.79%의 금액 중 3%를 해당재원으로 하여 같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에 교부하는 것으로 교육청은 관행적으로 본예산에 이를 편성하지 아니하고 예산 성립전 사용제도를 활용하여 우선 집행 후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왔음(예산안 총칙 제9조).

지역교육현안수요	79,430	0.7%	38,468	0.4	-	-	-	-
재해대책수요	25,290	0.2%	23,513	0.2	-	-	-	-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에서는 매년 상당한 금액의 사업들을 본예산 편성 후 회계연도 중에 교부하고 있는바, 교육감은 적재적소에 재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 조건이나 용도를 면밀히 검토하여 교육부에 조정 신청을 하는 등 특별교부금 운용을 위한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㉔ 증액교부금

- 금번 예산안의 증액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제4항 및 제14조와²⁷⁾ 「시·도 및 시·군·구의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고시」 따라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총비용의(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금) 국가부담액으로, 금번 예산안에는 학생수 감소에 따라 전년도 1,767억 1천만원보다 143억 9천 3백만원(△8.1%) 감액된 1,623억 1천 7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이와 관련해서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부칙<법률 제16673호, 2019.12.3>에서 국가부담분의 유효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 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아직까지 고교 무상교육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조달 방안이 확보되지 않아 기관별 분담에서 향후 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따라서 교육청은 고교 무상교육의 안정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서라도 유효기간 만료 후 국가 부담분 또는 「시·도 및 시·군·구의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고시」에 따른 서울시 부담분의 축소 등으로

2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④ 국가는 지방교육재정상 부득이한 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예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부금 외에 따로 증액교부할 수 있다.

제14조(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4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3조제4항에 따라 따로 증액교부하여야 한다.

② 시·도 및 시·군·구는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인해 교육청 부담분이 증가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② 국고보조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년도		2021년도	증 감		재원별	
	금액	구성비		금액	비율	일반	목적
국고보조금	23,328	0.2	21,218	2,110	9.9	0	23,328

- 금번 예산안의 국고보조금은 2021년도 보다 21억 1천만원 증액된 233억 2천 8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된 증액사유는 초등 돌봄교실 시설확충(△6억 9천만원), 온라인콘텐츠 활용 교과서 시범사업운영(△3억 2천만원) 등이 감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 학습특별지원이 12억 3천 3백만원이 증액됨에 따른 것입니다.
- 저소득층 학습특별지원은 코로나19에 따른 저소득층 학생의 학습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학습을 위한 교재비와 EBS컨텐츠를 1인당 10만원씩 2022년에 한시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울런 사업과 유사한 형태의 학습격차 완화 지원 사업입니다.

[표-22] 국고보조금 편성사업

(단위: 백만원, %)

연번	사업부서	사업명	2022년도	2021년도
1	참여협력담당관	교육급여	14,479	12,617
2		저소득층학습특별지원	1,233	-
3	초등교육과	초등돌봄교실시설확충	300	990
4	중등교육과	온라인콘텐츠활용교과서시범사업운영	1,728	2,048
5	체육건강문화예술과	학교흡연예방교육	3,108	3,107
6		전국소년체전지원	364	368
7		초등학교스포츠강사배치지원	2,116	1,999
8		초등학교스포츠강사배치지원(연수비)	-	89
		합 계	23,328	21,218

- 이처럼 목적이 지정된 금년도 국고보조금 사업은 ‘교육급여(144억 7천 9백만원)’, ‘저소득층 학습 특별지원(12억 3천 3백만원)’, ‘초등돌봄교실 시설확충(3억원)’, ‘온라인콘텐츠활용교과서시범사업운영(17억 2천 8백만원)’, ‘학교흡연예방교육(31억 8백만원)’, ‘전국소년체전지원(3억 6천 4백만원)’, ‘초등학교스포츠강사배치지원(21억 1천 6백만원)’의 7개 사업이 편성되었습니다.

[표-23] 최근3년간 교육급여지원 재원분담 내역

(단위: 백만원, %)

분담주체	재원분담					
	2020		2021		2022	
	금액	분담률	금액	분담률	금액	분담률
중앙정부(교육급여보조금)	12,991	47.9%	12,257	48.9%	14,479	50.6%
지방자치단체(교육급여보조금)	8,660	31.9%	8,171	32.6%	9,653	33.7%
소 계	21,651	79.8%	20,428	81.5%	24,132	84.3%
교육청	5,488	20.2%	4,634	18.5%	4,499	15.7%
총 계	27,139	100.0%	25,062	100.0%	28,631	100.0%

③ 특별회계전입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년도		2021년도	증 감		재원별	
	금액	구성비		금액	비율	일반	목적
특별회계전입금	522,375	4.9	537,591	△15,216	△2.8	0	522,375

- 금번 예산안의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은 유아 수 감소로 인해 전년도 보다 152억 1천 6백만원이 감소한 5,223억 7천 5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표-24] 최근3년간 누리과정 예산 편성 내역

(단위: 명, 백만원)

구분		2020		2021		2022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어린이 집	3세	37,734	142,357	32,606	134,206	29,492	121,389
	4세	30,512	116,008	27,491	113,153	24,413	100,484
	5세	27,200	103,924	26,451	108,872	23,962	98,428
소계		95,446	362,289	60,097	356,232	77,867	320,501
유치원	3세	19,206	58,413	17,677	57,223	16,231	52,676
	4세	27,199	80,584	24,532	77,589	22,336	71,359
	5세	32,158	93,416	27,436	84,034	25,089	77,839
소계		78,563	232,414	102,306	218,846	63,656	201,874
총계		174,009	594,703	156,193	575,078	141,523	522,375

- 이와 같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에 따라 2017년부터 신규 세입과목으로 편성된 세입 재원으로, 동 재원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5조에²⁸⁾ 따라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중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으로 정하는 금액과 정부가 별도로 정하는 금액을 누리과정 지원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나, 한 차례 기한을 연장²⁹⁾하여 현재는 2022년까지만 교부되는 한시적인 재원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 그러나 대부분 이전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교육청의 세입구조와 경직성 경비 등의 비중이 높은 세출 구조의 한계상 지속적인 재원이 필요한 누리과정에 대한 재원분담은 정부의 부담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8)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5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① 정부는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중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으로 정하는 금액을 일반회계로부터 특별회계에 전입한다.

② 정부는 제4조의 사업을 위하여 제1항의 전입금 외에 예산에서 정하는 금액을 일반회계로부터 특별회계에 전입한다.

29) 과거 특별회계를 설치하기 전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과 관련하여 「유아교육법 시행령」상의 ‘무상교육’을 근거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여야 한다는 입장과 보육시설인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비용은 보건복지부 소관 사항이므로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의 대립이 있었으며, 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액을 국가가(교육부·보건복지부) 지원할 것인지, 아니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할 것인지 등에 대해 첨예한 논쟁이 있었음. 국회에서는 이러한 논란이 재현되는 것을 우려하여 2019년 10월 31일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여 동 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였음.

- 따라서 교육청은 누리과정 재원분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교육청의 입장을 정부기관에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개진하여 누리과정 지원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표-25] 누리과정 관련 법률 및 시행령 현황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법률	제24조(무상교육) ·초등학교 취학직전 3년의 유아교육을 무상교육으로 하고 그 내용 및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	제34조(무상보육) ·무상보육 대상을 영유아 전체로 하고, 그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
시행령	제29조(무상교육의 내용 및 범위) ·무상교육 대상자를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는 만 3~5세 유아로 함	제22조(무상보육의 내용 및 범위 등) ·무상보육 대상자를 어린이집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는 만 3~5세 유아로 함 제23조(무상보육 실시 비용) ·어린이집 누리과정 실시비용을 보통교부금에서 부담하되,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의 유효기간까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서 부담

나)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예산안 47쪽~61쪽, 사업별 설명자료 17쪽~23쪽)

-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³⁰⁾에 따라 지

30)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① 시·도의 교육·학예에 드는 경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부담하되, 의무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원 중 교부금과 제2항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하고, 의무교육 외의 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원 중 교부금, 제2항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수업료 및 입학금 등으로 충당한다.

② 공립학교의 설치·운영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도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각각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예산에 계상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증감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지방세법」 제151조에 따른 지방교육세에 해당하는 금액
2. 담배소비세의 100분의 45[도(道)는 제외한다]
3. 서울특별시의 경우 특별시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통세 중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목적세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광역시 및 경기도의 경우 광역시세 또는 도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목적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5, 그 밖의 도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도세 또는 특별자치도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목적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천분의 36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세목의 월별 징수내역을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도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세목의 월별 징수액 중 같은 항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하는 금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다음 달 말일까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되, 전출하여야 하는 금액과 전출한 금액의 차액을 분기

방자치단체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되는 법정이전수입과 비법정이전수입으로 구성되는 바, 금번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2021년도 보다 4,532억 1천 7백만원(12.6%)이 증가한 4조 587억 6천 7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표-26] 최근 5년간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광역	3,096,678	3,165,942	3,356,792	3,601,427	4,039,724
기초	3,600	3,502	2,598	4,123	19,043
합계	3,100,278	3,169,444	3,359,390	3,605,550	4,058,767

① 법정이전수입

(단위: 백만원, %)

구분	2022년도		2021년도	증 감		재원별	
	금액	구성비		금액	비율	일반	목적
지방교육세	1,966,277	18.6	1,730,527	235,750	13.6	1,966,277	0
담배소비세	257,189	2.4	261,068	△3,879	△1.5	257,189	0
시도세	1,662,994	15.7	1,431,797	231,197	16.1	1,662,994	0
합부교담용지금	1,995	0.1	7,386	△5,391	△73.0	1,995	0
지부발교음보재전정금	96,595	0.9	105,918	△9,323	△8.8	96,595	0
교육급여보조금	9,653	0.1	8,411	1,242	14.8	0	9,653
무상교육경비금	15,143	0.1	16,567	△1,424	△8.6	0	15,143
소계	4,009,846	37.9	3,561,674	448,172	12.6	3,985,050	24,796

별로 정산하여 분기의 다음 달 말일(마지막 분기는 분기의 말일로 한다)까지 전출하여야 한다.

⑤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전출금(轉出金)의 차액은 늦어도 다음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⑥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되는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미리 해당 시·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와 협의하여야 한다.

⑦ 시·도교육위원회는 제6항에 따라 편성된 세출예산을 감액하려면 미리 해당 교육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와 협의하여야 한다.

⑧ 시·도 및 시·군·자치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⑨ 시·도는 관할구역의 교육·학예 진흥을 위하여 제2항 각 호 외에 별도의 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⑩ 시·도지사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의 회계연도별·월별 전출 결과를 매년 2월 28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교육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금번 예산안의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중 법정이전수입은 2021년도 보다 4,481억 7천 2백만원이 증가한 4조 98억 4천 6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법정이전수입 중 지방교육세전입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따라 「지방세법」 제151조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하여 교부되는 세입재원으로, 2021년도 보다 2,357억 5천만원이 증가한 1조 9,662억 7천 7백만원이 편성되었고, 시도세전입금은 2021년도 보다 2,311억 9천 7백만원 증가한 1조 6,629억 9천 4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담배소비세전입금은 전년도 보다 38억 7천 9백만원이 감소한 2,571억 8천 9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³¹⁾.
- 그 밖에 학교용지부담금(19억 9천 5백만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965억 9천 5백만원), 교육급여보조금(96억 5천 3백만원), 무상교육경비전입금이(151억 4천 3백만원) 편성되었습니다.

② 비법정이전수입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년도		2021년도	증 감		재원별	
	금액	구성비		금액	비율	일반	목적
광역자치단체	40,345	0.4	42,276	△1,931	△4.6	0	40,345
기초자치단체	8,576	0.1	1,600	6,976	436.0	0	8,576
소 계	48,921	0.5	43,876	5,045	11.5	0	48,921

- 비법정이전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 「도서관법」 제29조와³²⁾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른³³⁾

31) ○ 지방세 전입금 재원 구성

- 지방교육세 전입금: 7개 세목
 - ※ 취득세액의 10%, 등록면허세액의 20%, 레저세액의 40%, 담배소비세액의 43.99%, 주민세 균등분 세액의 10%(인구 50만이상시 25%), 재산세액의 20%, 자동차세액의 30%
- 담배소비세액의 전입금: 특별 및 광역시 담배소비세액의 45%
- 시·도세 전입금: 시·도세 총액의 서울 10%, 광역시 및 경기도 5%, 기타 시·도 3.6%

재원을 세입으로 구성되는바, 금번 예산안은 2021년도 보다 50억 4천 5백만원이 증가한 489억 2천 1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비법정이전사업 예산안의 세부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공공도서관운영비 지원은 23억원이고,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교육경비 보조금은(15개 사업) 380억 4천 5백만원이며, 중·고 입학준

3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⑧ 시·도 및 시·군·자치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도서관법」

제29조(공립 공공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서관의 설립·운영 및 도서관자료 수집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등 공립 공공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공립 공공도서관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에서 그 운영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③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립·운영하는 공립 공공도서관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운영비의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33)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3조(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미리 협의한 후 제11조의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같다.

③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교육사업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대상과 보조규모 및 보조방법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3.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4.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6.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7. 그 밖에 친환경 무상급식비를 제외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여건 개선사업
- ④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보와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⑤ 기본계획의 수립·고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예산의 계상) 시장은 제3조제3항의 각 호에 따른 교육사업의 보조에 관한 예산을 교육비특별회계의 전출금 등으로 계상할 수 있다.

제5조(교육경비보조금의 재원 등) ① 제4조에 따른 교육경비 보조금의 규모는 해당연도 본 예산의 세입 중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보통세의 100분의 6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② 교육경비 보조금의 종류는 일반교육경비보조금과 특별교육경비보조금으로 하고, 특별교육경비보조금의 재원은 교육경비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10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특별교육경비보조금은 기본계획 수립 당시 예상치 못한 긴급하고 특별한 교육경비 보조 수요가 있는 경우에 유치원·학교 등(이하 "교육경비 보조대상"이라 한다)의 교부신청을 받아 시장과 교육감이 협의하여 교부를 결정한다. 그 밖에 특별교육경비보조금의 지원대상과 절차,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교육경비 보조금은 목적 및 조건을 지정하여 특정사업별로 교부한다.

제11조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및 교육경비 보조사업 선정
3. 교육경비 보조사업별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
4. 교육경비 보조사업 평가
5.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비금에 대한 기초자치단체 분담금은 85억 7천 6백만원입니다.

- 이 중 광역자치단체전입금의 경우 서울시의 2022년도 예산안에는³⁴⁾ ‘일반교육경비(297억 6백만원)’ 과 ‘특별교육경비(51억 9천 8백만원)’, ‘중·고교 입학준비금 지원(128억 6천 4백만원)’ 및 신규로 ‘초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42억 1천 6백만원)’ 사업으로 총 519억 8천 4백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교육청은 금번 예산안에 ‘학교 체육관 건립(24억원)’, ‘유치원 아이놀터 조성(20억원)’, ‘예체능 및 디지털 분야 협력강사 및 멘토링 지원(10억원)’, 그리고 ‘초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42억 1천 6백만원)’ 을 제외한 총 380억 4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이들 사업 중 ‘학교 체육관 건립’ 등 3개 사업과 일부사업비가 조정된 ‘마을결합중점학교’, ‘학교급식현대화’ 사업은 본예산 확정 후 회계연도 중에 용도가 지정되어 시기별로 사업비가 교부될 것으로 보이는바, 동 사업들은 우선확정하여 집행한 후 향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는 본예산안을 기준으로 서울시의 비법정전출금 예산안과 교육청의 비법정전입금 예산안상의 세입·세출 규모가 서로 상이하게 계상되는 결과가 되어 예산총계주의 원칙에³⁵⁾ 반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³⁶⁾

- 다만 ‘꿈을 담은 교실만들기 사업’ 이나 ‘학교 체육관 건립’, ‘특별교육지원사업’ 등은 교육비특별회계 세출구조상 사업대상(학교 등)을 특정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하며, 일부 시설사업의 경우 사전절차를 미이

34) 「서울특별시 2021년도 예산안」 952p 참조.

35) 「지방재정법」

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 ①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금을 운용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보관할 의무가 있는 현금이나 유가증권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36) 「2022 서울특별시 예산(안)」의 평생교육국 예산에는(964p) 전출금으로 519억 8천 4백만원이 편성되어 있음.

행함으로 인해 사업대상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동 사업재원을 교육청 예산안에 계상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³⁷⁾.

-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와 교육청이 교육행정협의회를 조기에 개최하여 비법정전입금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대상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한다면 상기한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세입·세출에 대한 불일치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바, 이를 위한 적극적 대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표-27] 2019~2021년 교육경비 지원 사업 내역³⁸⁾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최종협약안	2021년도 대비증감	증감률
계	67,299	54,376	51,984	△8,276	△15.2
일반교육지원사업	60,570	36,451	29,706	△6,745	△18.5
학생·교육과정지원사업	7,139	6,192	1,020	△5,172	△83.5
1. 학습준비물비 지원	5,239	4,992	-	△4,992	△100.0
2. 서울영어마을 참가비 지원	1,300	600	420	△180	△30.0
3. 특성화고 인재육성지원	600	600	600	0	0.0
대상학교 선정 지원사업	53,431	30,259	28,686	△1,573	△5.2
4. 학교 화장실 리모델링	5,750	4,075	-	△4,075	△100.0
5. 서울형 혁신학교 지원	1,610	1,344	-	△1,344	△100.0
6. 유아교육 지원	610	610	-	△610	△100.0
7.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	1,512	1,512	-	△1,512	△100.0
8. 문화예술특별교실 설치	1,080	720	1,080	360	50.0
9. 공공도서관 혁신운영 지원	700	350	700	350	100.0
10. 꿈을 담은 교실 만들기	5,767	3,700	7,300	3,600	97.3
11. 학교CCTV교체	1,535	1,535	1,535	0	0.0
12. 서울형 메이커 스페이스 운영	1,000	1,000	-	△1,000	△100.0
13. 미래형 교실 구축 지원	1,410	940	940	0	0.0
14. 학교 체육관 건립	17,500	600	2,400	1,800	300.0

37) 구체적인 사업대상은 2021년에 개최되는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됨.

38) 중·고교 입학준비금 지원(121억 2천 3백만원) 제외.

15. 학교시설물 개방 우수학교 시설개선지원	3,000	2,100	2,100	0	0.0
16. 꿈을 담은 놀이터 만들기	1,200	1,200	1,346	146	12.2
17. 서울상도유치원 지원	550	550	660	110	20.0
18. 학교급식 노후조리기구 현대화사업	2,317	1,000	4,000	3,000	300.0
19. 마을결합형학교지원	1,000	1,000	1,125	125	12.5
20. 스포츠스타와 함께하는 독서 진흥 캠페인	-	500	500	0	0.0
21. 유치원방과후과정 돌봄지원인력 지원	1,000	1,000	-	△1,000	△100.0
22. 서울나래학교 주민·학부모 편의시설 설치	-	1,000	-	△1,000	△100.0
23. 마을결합형 학교공간 시설개선 지원	-	800	2,000	1,200	150.0
24.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사업	-	4,723	-	△4,723	△100.0
25. 특성화고 드론과학실 및 드론교육원 조성	-	-	-	-	-
26. 학교 현장체험 버스 지원	1,100	-	-	-	-
27. 아름다운 우리학교 만들기	3,860	-	-	-	-
28. 소상공인 인식 개선 사업	130	-	-	-	-
29. 찾아가는 학교안전점검단	600	-	-	-	-
30. 학교보안관실 설치지원	200	-	-	-	-
31. [신규] 유치원 아이놀터 조성	-	-	2,000	2,000	-
32. [신규] 예체능 및 디지털분야 협력강사 및 멘토링 지원	-	-	1,000	1,000	-
특별교육지원사업	6,729	5,437	5,198	△1,531	△28.2
중고교 입학준비금지원	-	12,488	12,864	376	3.0
[신규]초등학교 입학준비금지원	-	-	4,216	4,216	-

- 다음으로 비법정이전수입 중 조례상 전출금(교육경비 보조금)의 규모와 관련해서 살펴보면, 현행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 5조제1항은 교육경비 보조금의 규모를 “본 예산의 세입 중 「지방세기 본법」 제8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보통세의 1000분의 6이내의 금액” 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른 교육경비 보조금의 기준이 되는 서울시의 「2022 서울특별시 예산(안)」 보통세 수입은 전년도 보다 2조 3,907억 5백만원(16.5%)이 증가한 16조 8,805억 7천 9백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서울시가 통보한 금번 교육청 예산안의 교육경비 보조금 총 규모는(미편성분 포함, 초·중·고교 입학준비금 지원 포함) 서울시 예산안 기준 보통세 수입의 0.31%에 불과하여 조례가 명시한 최대치인 0.6%의 절반 수준입니다.

[표-28] 최근 5년간 서울시 교육경비 보조금 편성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편성기준액 (보통세)	조례상편성가용액 (보통세0.6%이내)	의회심의 요청액	의회심의요청액의 편성기준액 대비비율	최종편성액
2018	12,818,928	76,914	51,025	0.40	28,268
2019	13,244,792	79,469	53,300	0.40	53,300
2020	14,496,136	86,977	53,300	0.37	67,299
2021	14,489,874	86,939	47,376	0.33	54,376
2022	16,880,579	101,283	51,984	0.31	-

- 이와 관련하여 교육청은 서울시와 적정 교육경비 보조금 확보를 위한 협의 등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협의하였으나,³⁹⁾ 서울시의 경우 예산부서와 지속적 협의를 할 예정이며, 교육경비보조금 규모가 전년도 의회 제출 수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는 서울시가 교육경비 보조금을 서울시교육청에 배부하는 시혜적인 지원금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교육청의 안정적 교육재원 확보가 용이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는 ‘중·고교입학준비금(128억 6천 4백만원)’에 더해 ‘초등학교 입학준비금(42억 1천 6백만원)’ 까지 교육경비보조금에 포함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사업을 종료하거나 감액⁴⁰⁾하여 조례상 편성 가용액 기준(0.6%)의 절반 정도 수준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39) 2021년 서울특별시 교육행정협의회 회의결과 알림(참여협력담당관-12136, 2021.10.13.); 2021년 제3차 교육경비보조심 의위원회 서면심의 알림(서울시 교육정책과-14105).

40) 장기적·지속적 투자가 필요한 환경개선사업 등 시설사업 위주로 교육경비보조금을 선정하였으며, 교육과정 및 인건비성 경비사업은 교육청 사업으로 전환되었음(‘유아교육 지원’등 5개 사업)

[표-29] 서울시 교육경비 보조 사업 감액 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예산	2022예산안	증감
서울영어·창의마을 참가비 지원	600	420	△180
[전환] 유아교육지원	610	-	△610
[전환] 유치원 방과후과정 돌봄지원인력 지원	1,000	-	△1,000
[전환] 공립초 학습준비물비 지원	4,992	-	△4,992
[전환]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배치	1,512	-	△1,512
[전환] 서울형 혁신학교 지원	1,344	-	△1,344
[종료] 화장실 리모델링	4,075	-	△4,075
[종료]메이커스페이스 공간 조성	1,000	-	△1,000
[종료]서울내래학교 주민·학부모 편의시설 설치	1,000	-	△1,000
[종료]지역간 교육격차 해소사업	4,723	-	△4,723
특별교육경비	5,437	5,198	△239

- 따라서 교육청은 적절한 교육재원의 확보를 통한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라도 현행 조례상 교육경비보조금의 산정비율에 최소한의 하한선을 설정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다각적인 대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⁴¹⁾.
- 또한 금번 교육경비보조금에 포함되어 있는 ‘중·고교 입학준비금 지원’ 과 새롭게 편성된 ‘초등학교 입학준비금’ 의 경우도 서울시의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과 같이 서울시가 교육경비 보조가 아닌 일반회계에서 직접 사업비로 집행하도록 하는 등 특정사업으로 인해 교육경비 보조금 총 규모가 잠식당하지 않도록 적절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41) 서울시의회는 보통세의 1000분의 6 이내로 규정되어 있는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제5조를 보통세의 1000분의 4이상 1000분의 6 이내로 개정하는 일부 개정안을 의결(2020.12.16.)하였으나, 서울시는 「지방자치법」제127조 등 상위법을 위반(예산편성권 제약)한다는 의견을 들어 서울시의회에 재의를 요구(2021.1.4.)한 바 있음.

다) 기타이전수입(예산안 65쪽~70쪽, 사업별 설명자료 24쪽~27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년도		2021년도	증 감		재원별	
	금액	구성비		금액	비율	일반	목적
기타이전수입(기타지원금)	8,732	0.1	8,967	△235	△2.6	2,459	6,273

- 금번 기타이전수입은 병설유치원 신증설을 위한 ‘KB금융그룹 기부금(7억 2천만원)’ 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평가 지원금(54억 8천 7백만원)’ 과 ‘농협 교육금고 약정 지원금(24억 5천 9백만원)’, ‘고용노동부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원금(3천만원)’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중등교원 및 지방공무원 연수생 연수비(3천 6백만원)’ 등 총 87억 3천 2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 자체수입(예산안 73~100pp, 사업별 설명자료 31~52pp)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년도		2021년도	증 감		재원별	
	금액	구성비		금액	비율	일반	목적
교수학습활동수입	1,464	0.1	2,141	△677	△31.6	1,464	0
행정 활동 수입	4,718	0.1	4,901	△183	△3.7	4,718	0
자 산 수 입	7,519	0.1	11,892	△4,373	△36.8	7,519	0
이 자 수 입	5,607	0.1	7,693	△2,086	△27.1	5,607	0
기 타 수 입	92,704	0.8	52,401	40,303	76.9	92,704	0
계	112,012	1.2	79,028	32,984	41.7	112,012	0

- 금번 예산안의 자체수입은 2021년 보다 329억 8천 4백만원이 증가한 1,120억 1천 2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먼저 기본적 교육수입과 선택적 교육수입으로 이루어진 교수학습활동수입은 전년도 보다 6억 7천 7백만원 감액된 14억 6천 4백만원이 편성되었는바, 이는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시행에 따라 입학금 및 수업료 등

기본적 교육수입이 발생하지 않아 지난년도 수업료 2천 4백만원만 편성되었고, 기숙사및급식과 평생학습수입으로 구성된 선택적교육수입이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교수·학습활동의 불확실성이 반영되어 전년도보다 3억 5천 3백만원 감액된 14억 3천 9백만원이 편성됨에 따른 것입니다.

- 그리고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으로 이루어진 행정활동 수입은 전년도 대비 1억 8천 3백만원 감액된 47억 1천 8백만원이 편성되었고, 임대료 수입과 토지매각, 기타 유형자산매각 및 무형자산매각으로 이루어진 자산 수입은 토지 매각 물량 감소로 전년도 보다 43억 7천 2백만원 감액된 75억 2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그 밖에 이자수입은 56억 7백만원이 편성되었고, 제재금수입(변상금, 위약금, 연체료, 과태료)으로 6억 8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수입(생산물매각대, 그 외 수입, 학교회계전출금 반납금 수입)이 915억 6천 4백만원, 지난년도수입(과년도 수입)은 4억 5천 9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이처럼 교육청의 자체수입은 교육청 전체 세입예산 대비 1.2% 규모의 매우 적은 세입재원으로 학령인구 감소와 고교 무상교육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따라서 교육청은 교육목적으로 활용할 가치가 적은 일반재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매각을 추진하는 등 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자산수입의 증대를 꾀할 필요가 있으며, 대부분을 통한 임대수입의 경우에도 사용료의 적기 부과 등으로 인한 임대 수익 증대와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및 연체료의 신속한 부과 등의 노력을 통해 자체수입 확충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전년도이월금(예산안 123~137pp, 사업별 설명자료 55~60pp)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년도		2021년도	증 감		재원별	
	금액	구성비		금액	비율	일반	목적
전 년 도 이 월 금	324,342	3.0	280,604	43,738	15.6	324,342	0
금 용 자 산 회 수	9,904	0.1	19,190	△9,286	△48.4	9,904	0
계	334,246	3.1	299,794	34,452	11.5	334,246	0

- 금변 순세계잉여금(전년도이월금)은 3,243억 4천 2백만원으로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의 결산 전망에 따른 추계액을 반영한 결과 전년도 보다 437억 3천 8백만원이 증가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에⁴²⁾ 따라 결산상 잉여금 중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세입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결산 전 당해 연도에 세입으로 이입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순세계잉여금은 「지방회계법」 제19조에⁴³⁾ 따라 세계잉여금에서 명시이월금, 사고이월금, 계속비이월금, 보조금 집행잔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여기서 세계잉여금은 수납된 세입액에서 지출된 세출액을 차감한 잔액을 말합니다⁴⁴⁾.

42)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6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9조 각 호의 금액과 지방채증권 또는 차입금의 상환해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移入)하여야 한다.

제17조(세계잉여금의 결산 전 이입)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 중에서 전년도 세입금의 수납액으로써 채무확정액과 법 제19조 각 호의 금액 및 지방채증권 또는 차입금의 상환재원에 충당한 후에 발생한 잉여금은 제16조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가 시작된 후 자금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만 전년도 세입·세출의 결산 이전이라도 당해 연도의 세입에 이입할 수 있다.

43) 「지방회계법」

제19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剩餘金)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잉여금을 그 잉여금이 생긴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까지 세출예산에 관계없이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용도가 정하여진 금액
2.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른 이월금

44) <세계잉여금 및 순세계잉여금>

◇ 세계잉여금 = 수납된 세입액-지출된 세출액(결산상 잉여금)

◇ 순세계잉여금 = 세계잉여금-(명시이월금+사고이월금+계속비이월금+보조금 집행잔액)

- 다만,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3년간 순세계잉여금의 본예산 반영 내역을 살펴보면, 교육청은 본예산 기준 연평균 3,791억 2천 2백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이는 전년도 불용추정액의 평균 70.9%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 이와 같은 순세계잉여금은 교육청의 재정여건상 세입의 한정성을 극복하기 위해 결산 전 미리 이를 세입에 편성한 것이나, 순세계잉여금과 같은 이월금은 다음연도의 주요한 세입재원이라는 점에서 순세계잉여금의 당해연도 본예산의 과다계상은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번 예산안의 순세계잉여금은 본예산 대비 전년도 불용추정액 평균보다 약 11% 높은 수준인 3,243억 4천 2백만원이 편성되었고, 이와 같은 반영비율은 최근 3년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더욱이 2022년 역시 코로나 19 재확산 등의 위험요소가 여전히 잔재하고 있어 교육청은 이에 따른 세입감소 등 유동적 상황 또한 대비하여야 하는바, 교육청이 금번 세입예산안에 2021년 불용추정액의 81.9%를 순세계잉여금으로 반영한 것에 대해서는 재정운영의 안정성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표-30] 최근 3년간 순세계잉여금 반영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본예산(안)	455,195	650,000	532,421	280,604	324,342
전년도불용추정액	633,306	650,000	822,228	386,865	396,033
반영율	71.9	100.0	64.8	72.5	81.9

바.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1) 세출예산 총괄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년도		2021년도	증 감		재원별		
		금액	구성비		금액	비율	일반	목적	
인건비	공무원	4,477,565	42.3	4,336,641	140,924	3.2	4,477,565	0	
	계약제교원 및 교육공무직	826,305	7.8	682,858	143,447	21.0	826,305	0	
	사립학교	1,282,507	12.1	1,306,214	△23,707	△1.8	1,282,507	0	
	계	6,586,377	62.2	6,325,713	260,664	4.1	6,586,377	0	
경상비	교육행정기관 운영비	33,000	0.3	29,924	3,076	10.3	33,000	0	
	학교운영비	공립	671,251	6.3	647,372	23,879	3.7	671,251	0
		사립	210,972	2.0	194,617	16,355	8.4	172,978	37,994
		소계	882,223	8.3	841,989	40,234	4.8	844,229	37,994
	계	915,223	8.6	871,913	43,310	5.0	877,229	37,994	
사업비	교육사업비	2,249,079	21.3	1,886,956	362,123	19.2	1,567,882	681,197	
	시설사업비	학교신증설	57,512	0.5	108,453	△50,941	△47.0	56,792	720
		일반시설	520,205	4.9	351,874	168,331	47.8	512,905	7,300
		급식시설	59,271	0.6	57,086	2,185	3.8	54,271	5,000
		소계	636,988	6.0	517,413	119,575	23.1	623,968	13,020
	계	2,886,067	27.3	2,404,369	481,698	20.0	2,191,850	694,217	
재무 활동	지방채상환등	52	0.1	15,605	△15,553	△99.7	52	0	
	B T L 상환	102,392	1.0	101,926	466	0.5	102,392	0	
	기금전출금	28,169	0.2	12,403	15,766	127.1	28,169	0	
	계	130,613	1.3	129,934	679	0.5	130,613	0	
예비비 및 기타	61,989	0.6	10,065	51,924	515.9	61,989	0		
합	계	10,580,269	100	9,741,994	838,275	8.6	9,848,058	732,211	

- 금번 예산안의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보다 8,382억 7천 5백만원 (8.6%) 증가한 10조 5,802억 6천 9백만원입니다.
- 인건비는 전년도보다 2,606억 6천 4백만원이 증가한 6조 5,863억 7천 7백만원이 편성되었고, 기관운영비 등 경상비는 전년도보다 433억 1천만 원이 감소한 9,152억 2천 3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교육사업비와 시설 사업비는 각각 3,621억 2천 3백만원과 1,195억 7천 5백만원이 증가 된 2조 2,490억 7천 9백만원과 6,369억 8천 8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그리고 BTL상환 등 재무활동비는 6억 7천 9백만원 증액된 1,306억 1 천 3백만원이, 예비비 및 기타는 전년도 보다 519억 2천 4백만원 증액 된 619억 8천 9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표-31] 2019~2022년 경직성 경비와 비경직성 경비

(단위: 백만원, %)

구분	성질별		2019년 최종예산	2020년 최종예산	2021년 추경까지	2022년 예산안
경직성 경비	인건비	공무원인건비	4,366,733	4,260,925	4,308,708	4,477,565
		계약제교원 및 교육공무직원	330,159	361,239	722,796	826,305
		사립학교인건비	1,159,859	1,371,667	1,267,585	1,282,507
		계	5,856,751	5,993,831	6,299,089	6,586,377
	기관운영비		34,055	29,110	31,640	33,000
	학교 운영비	공립학교운영비	751,802	848,961	690,702	671,251
		사립학교운영비	95,911	74,788	197,484	210,972
		계	847,713	923,749	888,186	882,223
	복지사업비		1,609,129	1,839,902	837,068	787,378
	지방교육채 및 BTL		980,978	109,843	425,541	102,444
계		9,328,626	8,896,435	8,481,524	8,391,422	
비경직성 경비	교육사업비(복지사업 제외)		748,268	944,553	1,643,573	1,461,701
	시설비	급식시설	108,901	82,287	72,924	59,271

	일반시설	767,843	687,494	839,425	520,205
	학교신설	223,488	139,831	139,519	57,512
	계	1,100,232	909,612	1,051,868	636,988
	예비비 및 기타	17,570	17,839	105,555	61,989
	기금전출금	-	-	301,112	28,169
	계	1,866,070	1,872,004	3,102,108	2,188,847
	총 계	11,194,696	10,768,439	11,583,632	10,580,269

- 금번 세출예산의 성질별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와 기관운영비, 학교운영비, 복지사업비 그리고 지방채 및 BTL 상환 등의 경직성 경비가 전체 세출예산의 79.3%(전년도 73.2%)에 달하고 있습니다.
- 이에 반해 교육사업비(복지사업 제외)와 시설비, 예비비 및 기타, 기금전출금 등을 포함한 비경직성 경비는 전체 세출예산의 20.7%(전년도 2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은 경직성 경비의 증가는 대외 여건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청의 재정운용의 유연성을 떨어뜨려 재정의 효율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예산 심의의 범위를 축소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직성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표-32] 최근 5년간 교육사업비 대비 시설사업비 증감

(단위: 백만원, %)

회계연도	전체예산	시설사업비(A)	교육사업비(B)	교육사업비대비 시설사업비(A/B)
2018	9,151,267	712,890	1,949,224	36.6
2019	9,380,315	771,653	1,937,965	39.8
2020	10,084,661	895,183	2,067,774	43.3
2021	9,741,994	517,413	1,886,956	27.4
2022	10,580,269	636,988	2,249,079	28.3

○ 한편, 세출예산 중 교육사업비와 시설사업비 총 규모는 2조 986억 8천 9백만원으로, 교육사업비는 전년도 보다 3,621억 2천 3백만원이 증가한 2조 2,490억 7천 9백만원이 편성되었고, 학교신증설 등의 시설사업비는 전년도 보다 1,195억 7천 5백만원이 증가한 6,369억 8천 8백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 세출예산안 중 시설사업비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평균액인 7,242억 8천 5백만원의 87.9%에 불과한바, 이는 교육사업비가 같은 기간 평균액 1조 9,604억 8천만원 대비 114.7%가 편성된 것과 대조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 더욱이 시설사업비의 경우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3년간 교육사업비 대비 그 비율이 계속해서 증가해 왔으나, 2021년의 경우 코로나 19에 따른 경기 침체를 우려하여 시설사업비가 대폭 감소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 예산안의 이전수입(중앙정부이전수입과 자치단체이전수입)이 전년도 대비 8.2% 증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육사업비 대비 시설사업비는 전년도 대비 0.9%만 증가한 28.3%가 편성되어 세출사업별 편중현상이 매우 심화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이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시행, 입학준비금지원 등의 신규사업 편성, 그리고 코로나19에 따른 학습결손을 회복하기 위한 기초학력보장지원과 방과후 학교 등으로 인해 교육사업비 내 복지사업비 비중이 증가함에 따른 것입니다.

[표-33] 교육사업비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년도		2021년도	증 감		재원별	
		금액	구성비		금액	비율	일반	목적
인	적 자 원 운 용	62,998	2.8	60,351	2,647	4.4	62,657	341
교	수 학습 활동 지원	583,355	25.9	433,374	149,981	34.6	491,699	91,656

교육복지	787,378	35.0	764,703	22,675	3.0	210,839	576,539
보건급식	629,674	28.0	492,359	137,315	27.9	625,869	3,805
평생교육	33,323	1.5	32,424	899	2.8	29,130	4,193
교육행정일반	152,351	6.8	103,745	48,606	46.9	147,688	4,663
합계	2,249,079	100	1,886,956	362,123	19.2	1,567,882	681,197

[표-34] 교육사업비 중 복지사업비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22년도		2021년도	증감		재원별	
	금액	구성비		금액	비율	일반	목적
학비지원	82,394	10.5	64,327	18,067	28.1	35,571	46,823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60,682	7.7	50,710	9,972	19.7	59,810	872
교육복지우선지원	38,737	4.9	32,055	6,682	20.8	34,148	4,589
급식비지원	8,976	1.1	10,519	△1,543	△14.7	8,976	0
정보화지원	3,953	0.5	3,382	571	16.9	3,953	0
누리과정지원	525,812	66.8	538,214	△12,402	△2.3	3,437	522,375
교과서지원	59,671	7.6	58,901	770	1.3	59,671	0
다문화 및 북한이탈 주민자녀교육지원	7,153	0.9	6,595	558	8.5	5,273	1,880
합계	787,378	100.0	764,703	22,675	3.0	210,839	576,539

○ 다만 그동안 교육사업비 중 교육복지사업의 비중은 2020년까지 약 65% 수준이었으나 금번 세출예산의 경우 교육복지사업비가 교육사업비의 35% 규모로 급격히 낮아졌는바⁴⁵⁾,

45) 최근3년간 교육사업비 대비 복지사업비 비중

(단위 : 백만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교육사업비	1,937,965	2,067,774	1,886,956	2,249,079
교육복지	1,259,641	1,355,253	764,703	787,378
교육사업비 대비 교육복지비율	65.0%	65.5%	40.5%	35.0%

이는 서울시교육청의 적극적인 재원 편성의 개선 노력에 의한 결과가 아닌 「2022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의 개정에 따라 교육복지사업 중 무상급식비가 보건의급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른 것입니다.

- 따라서 교육사업비 내 복지사업에 대한 편중현상은 여전하다 할 것인바, 교육청은 경제불황 등 대외적 여건의 불확실성에 의한 세수감소 등의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특정 사업영역이 무리하게 확대되는 것을 지양하여야 할 것이며,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사업간 재원배분의 형평성을 실질적으로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신규·종료 사업과 증액사업

[표-35] 2022년도 신규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주관기관	사업항목	주요 사업내용	2022년 예산(A)
감사관	적극행정정책추진및운영	서울형 적극행정 운영	10
참여협력담당관	저소득층학습특별지원	저소득층 학습 특별 지원	4,109
교육혁신과	수학교육여건개선	수학교육 기반 조성	552
교육혁신과	인공지능기반융합교육	SI기반융합교육을통한공교육혁신 등	478
교육혁신과	생태전환교육기금	생태전환교육기금 운용	1,000
유아교육과	4세대지능형나이스 유치원 업무 구축	지능형나이스 유치원업무 구축	344
유아교육과	외국국적유아학비지원	외국국적 유아학비 지원	1,869
중등교육과	금융교육활성화지원	금융교육 교육자료활용 교사연수	56
중등교육과	온라인보충과정운영	온라인 보충과정운영 위탁사업	127
민주시민생활교육과	대안교육기관지원	대안교육기관 등록 및 지원사업 운영	214
체육건강문화예술과	당뇨학생건강관리지원	소아당뇨학생관리지원	552
체육건강문화예술과	보건실현대화사업	학교보건실현대화사업 추진 및 매뉴얼 제작	2,005
체육건강문화예술과	학교석면조사	무석면학교 검증 및 석면관리컨설팅 운영	706
체육건강문화예술과	먹거리생태전환교육	먹거리 생태전환교육 선도학교운영 및 홍보자료 개발 등	745

[표-36] 2022년도 폐지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주관기관	사업항목	주요 사업내용	2021년 사업비
감사관	반부패청렴정책추진	청탁금지법 관련 연수 운영	9
정책안전기획관	대내외소통	민주시민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200
정책안전기획관	안전인프라구축	초등학교 스쿨존 서비스 만족도 조사	20
행정관리담당관	정보화기획	정보화교육실 운영	3
교육혁신과	디지털시민성역량함양	정보통신 윤리교육 지원	37
교육혁신과	수학교육지원	수학점핑학교운영	160
교육혁신과	대학서열화완화지원	대입제도 개선 기반 구축 지원	8
교육혁신과	자율학교등지정·운영·평가	평가단 운영	4
유아교육과	사립유치원회계운영지원	발전위원회 운영	5
유아교육과	서울유아교육지원계획수립	교원업무 정상화 지원	3
초등교육과	교육과정관련연구학교운영(초)	교육과정 연구학교 운영	10
중등교육과	원격교육지원	학부모 및 초등학생 원격교육 환경 만족도조사	40
중등교육과	개방-연합형선택교육과정운영지원	수업환경 개선	330
중등교육과	교육과정편성운영지도	교육과정 연구학교 운영	10
중등교육과	특목고등운영성과평가	외고, 국제고 운영성과 평가	2
중등교육과	독서토론논술활성화지원	학교 도서관 개선 지원	649
평생교육과	도서관정보화사업지원	전자도서관 운영 지원	20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성인권증진및성평등정책	성평등 연구자료 개발 보급	31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스쿨미투예방및학교회복지원	스쿨미투 예방 홍보자료 개발	175
민주시민생활교육과	학교안전망구축	초등학교 안심 서비스	21
체육건강문화예술과	체육관리	사제동행 걷기대회 지원	20
체육건강문화예술과	협력종합예술활동	중등협력종합예술활동	9
체육건강문화예술과	학교급식위원회운영	무상급식비 예산운용 및 급식관련 행정 처리방식 실태조사 등	40
체육건강문화예술과	보건교육연구활동지원	보건교육우수사례 보급	5
체육건강문화예술과	학교감염병관리	방역물품 등 지원	224
체육건강문화예술과	학교먹는물관리	부식억제장비 시범사업	100
체육건강문화예술과	학교미세먼지관리	공기청정기 설치 등	200
체육건강문화예술과	학교청소관리	청소용역비	26

- 금번 2022년도 예산안의 신규사업⁴⁶⁾은 감사관의 ‘적극행정정책 추진 및 운영’을 포함한 14개 사업에 총 127억 6천 7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폐지된 사업은 감사관의 ‘반부패청렴정책추진’ 사업 중 청탁금지법 관련 연수 운영 등 총 28개 사업에 총 23억 6천 1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 이처럼 교육청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업추진의 가능성과 효과성을 고려하여 새롭게 사업 예산을 편성하고 감액한 것은 한정된 예산의 건전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신규사업의 경우 새로운 교육정책을 기획하고 수립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업추진과 계획 등을 바탕으로 적정한 소요예산을 추계해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효율적 예산편성이라 할 것입니다.
- 그러나 [표-35]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일부신규사업의 경우 세부추진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예산 확정후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할 예정에 있는바, 이와 같은 합리적 검토 없이 사업비 확보를 위한 예산 편성은 예산 편성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신속한 예산 집행을 불가능하게 하여 결국 이월 및 불용액을 발생하게 하는 등 예산편성의 낭비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 더욱이 [표-37]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증액사업의 경우에도 전년도 보다 사업예산을 증액해야 하는 구체적 사유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사업추진계획 없이 연례적·반복적으로 예산을 증액 편성하는 것은 교육재정의 여건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바,

서울시교육청은 예산 편성전 신규사업과 증액사업에 있어 구체적 사업계획을 수립·검토하여 증액사유가 불분명한 사업의 경우 과감한 예산 삭감을 통해 적정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6) 신규사업은 2021년도 본예산 및 추경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을 의미함.

[표-37] 전년도 대비 증액사업 중 사업계획 미수립 사업내역

(단위 : 백만원)

주관기관	사업항목	주요 사업내용	2022년 예산(A)	2021년 예산(B)	증감액 (A-B)	증감률 (A-B/B)
감사관	공익제보센터운영	공익제보위원회 운영 및 공익제보구조금 등	506	156	350	223.5%
총무과	지방공무원국외연수	지방공무원 국외연수 지원	150	105	45	42.9%
정책안전기획관	서울교육주요업무수립	서울교육주요업무 수립	74	56	18	32.1%
정책안전기획관	서울교육중장기발전계획관리	중장기 발전계획 상상톡 및 연구모임	71	44	27	59.7%
예산담당관	지방교육재정운영	지방교육재정평가 및 재정투자사업 심사 등	47	36	11	31.9%
예산담당관	학교회계예산편성	에듀파인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학교회계 예산편성 지원	1,205	776	429	55.3%
행정관리담당관	학습커뮤니티운영	학습커뮤니티 운영	22	16	6	37.0%
참여협력담당관	수익자부담경비지원	수익자부담경비 지원	2,889	2,202	687	31.2%
참여협력담당관	입학준비금지원	입학준비금 지원	30,184	21,221	8,963	42.2%
참여협력담당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운영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13,176	9,089	4,086	45.0%
참여협력담당관	학교운영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지원	69	33	36	110.8%
노사협력담당관	교육공무직노무관리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인사위원회 운영 등	701	473	228	48.3%
노사협력담당관	교원노사관리	교직단체지원 및 노사관계연수 등	449	219	231	105.4%
유아교육과	서울유아교육지원 계획수립	교육과정 홍보 및 자연친화 교육 활성화 지원 등	229	146	83	56.7%
유아교육과	지역유아교육협력	교원학습공동체 및 지역유아교육협력네트워크 운영	467	346	121	35.0%
유아교육과	에듀케어운영확대	공립에듀케어 신증설 및 에듀케어 운영 지원	6,957	4,271	2,686	62.9%
유아교육과	만3~5세 특수교육 대상자무상교육비	무상교육비 지원	255	136	119	87.0%
유아교육과	저소득층유아학비 추가지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1,261	314	947	301.2%
초등교육과	협력학습참여자수업지원	꿈꾸는 연구실 구축 지원 및 협력적 평가방법 개선 등	347	242	105	43.3%
초등교육과	방과후학교사업지원	방과후학교 사업 운영 지원	12,343	8,707	3,636	41.8%
초등교육과	방과후돌봄서비스 연계강화	방과후돌봄 안전망 구축 및 학교돌봄터 운영 협력	1,411	456	955	209.5%
중등교육과	교육과정편성 운영지도	초,중,고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원	101	51	50	97.4%
중등교육과	예술중점학교 운영비지원	예술중점학교 운영 지원	291	216	75	34.7%
중등교육과	고교학점제도 도입 운영지원	고교학점제연구-선도학교운영 등	4,664	1,904	2,760	144.9%
중등교육과	고교학점제 현장 정착지원	고교학점제 대국민이해도 제고 콘텐츠제작	48	15	33	220.0%
중등교육과	오디세이학교운영	오디세이학교 협력기관 운영	849	649	200	30.9%

		및 지원				
민주시민 생활교육과	특수학교(급)교원 전문성신장연수	특수교사전문성신장 및 연수 지원	235	144	92	63.8%
민주시민 생활교육과	학교폭력사안처리 지원	학교폭력 소송 및 연수 지원 등	346	178	168	94.0%
민주시민 생활교육과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운영	학교폭력예방교육 운영 및 지원	304	60	244	406.1%
민주시민 생활교육과	학교폭력피해학생 교육치유지원	학교폭력피해학생 교육치유프로그램	977	671	306	45.6%
체육건강 문화예술과	선진운동부육성	전임코치 인건비 및 취약종목 지원 등	21,093	15,220	5,873	38.6%

3) 특별교부금에 의해 신설된 사업 추진에 따른 자체재원부담

(단위 : 천원)

부서명	세세부사업명(사업명)	최초 시행 연도	최초 부담비율 (교육부:교육청)	2022년도 예산(안)		
				부담비율 (교육부:교육청)	특별교부금	대응투자액
참여협력팀등관	마을기반형교육복지협력사업	2021	3 : 97	6 : 94	400,000	5,870,550
교육혁신과	EBSm구축운영	2021	100 : 0	55 : 45	124,000	101,000
교육혁신과	영재교육내실화지원	2021	50 : 50	20 : 80	20,000	80,000
중등교육과	원격기반구축	2021	100 : 0	75 : 25	679,053	228,186
중등교육과	K-에듀테크스마트고교육성및확산	2021	100 : 0	40 : 60	40,000	60,000
진로직업교육과	직업계고실험실습생및교사건강관리	2021	40 : 60	20 : 80	529,480	2,117,920
교육혁신과	AI교육중심고등학교	2020	100 : 0	40 : 60	140,000	210,000
중등교육과	고교학점제대국민이해도제고	2020	100 : 0	50 : 50	24,000	24,000
중등교육과	고교학점제 지원센터 운영	2020	100 : 0	83 : 17	204,200	34,714
민주시민 생활교육과	학교성희롱성폭력근절기반구축및 양성평등문화조성	2020	100 : 0	19 : 81	39,500	170,651
진로직업교육과	직업계고학점제운영지원	2020	100 : 0	20 : 80	438,200	1,752,800
진로직업교육과	직업계고매력도제고	2020	50 : 50	30 : 70	1,764,000	3,200,000
진로직업교육과	직업교육선도모델운영	2020	50 : 50	80 : 20	3,253,000	813,250
진로직업교육과	취업지원센터운영	2020	50 : 50	20 : 80	78,000	312,000
유아교육과	사립유치원K-에듀파인맞춤형지원	2019	74 : 26	50 : 50	118,590	119,570
초등교육과	인공지능초등수학지원시스템현장지원	2019	100 : 0	40 : 60	41,000	60,000
초등교육과	방과후돌봄안전망구축	2019	100 : 0	50 : 50	216,375	216,375

초등교육과	온종일돌봄상생기반조성사업	2019	100 : 0	50 : 50	6,000	6,000
중등교육과	영어교육내실화지원	2019	100 : 0	13 : 87	27,000	187,000
중등교육과	고교학점제인프라구축지원	2019	100 : 0	75 : 25	200,000	50,000
중등교육과	학교간공동교육과정운영활성화	2019	100 : 0	55 : 45	593,500	476,000
중등교육과	고교학점제연구-선도학교운영	2018	100 : 0	5 : 95	200,000	4,020,000
진로직업교육과	고졸취업지원확대	2018	100 : 0	20 : 80	390,000	1,560,000
민주시민생활교육과	학교폭력사안처리지원	2017	100 : 0	50 : 50	158,000	187,950
민주시민생활교육과	관계회복의학교문화조성	2017	100 : 0	50 : 50	92,000	91,270
진로직업교육과	일반고교생직업교육과정운영지원	2017	100 : 0	60 : 40	213,500	140,910
체육건강문화예술과	예술드림거점학교	2017	100 : 0	62 : 38	40,000	25,000
체육건강문화예술과	예술동아리지원	2017	100 : 0	50 : 50	100,000	100,000
참여협력담당관	저소득층교육비지원서비스개선	2016	100 : 0	54 : 46	17,600	15,000
민주시민생활교육과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운영	2015	100 : 0	50 : 50	85,000	85,000
중등교육과	디지털교과서개발및활용활성화	2013	100 : 0	11 : 89	439,041	3,600,997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장애학생인권보호및교육권보장	2013	100 : 0	60 : 40	86,000	57,000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청소년경찰학교운영	2013	100 : 0	50 : 50	44,500	44,500
민주시민생활교육과	학교폭력피가해학생교육치유지원	2013	100 : 0	30 : 70	301,000	676,000
민주시민생활교육과	학생상담활성화지원	2013	100 : 0	50 : 50	41,500	41,500
민주시민생활교육과	학생상담자문지원	2013	100 : 0	24 : 76	23,250	75,000
교육혁신과	과학고내실화지원	2012	70 : 30	20 : 80	40,000	141,830
초등교육과	기초학력진단-보정시스템운영및 기초학력지원강화	2012	100 : 0	25 : 75	66,000	197,801
학교지원과	학교시설수요적정관리	2011	100 : 0	34 : 66	79,000	151,214
예산담당관	지방교육재정분석연구지원	2010	100 : 0	54 : 46	112,000	97,284
중등교육과	영어회화전문강사배치	2009	50 : 50	15 : 85	1,483,000	8,571,552
중등교육과	EBSe영어교육방송지원	2008	100 : 0	39 : 61	197,000	308,000
중등교육과	EBS수능강의운영지원	2008	100 : 0	34 : 66	949,000	1,818,000
중등교육과	수능모의평가지원	2003	100 : 0	10 : 90	440,000	3,962,000

- 특별교부금은 교육관련 국가시책과 지역현안 및 재난안전관리 등을 위해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되는 지방재정교부금의 일환으로 금년도 예산안에는 159개 사업에 1,065억 1천 8백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 이 중 교육부 재원부담으로 신설된 사업은 2003년 이후 총 35개 사업이었으나, 현재 진행되는 사업 중 금번 예산안에 교육부 부담 100%로 진행되는 사업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 더욱이 2021년도에 교육부 재원만으로 추진된 ‘EBSm 구축운영’, ‘원격기반구축’, ‘k-에듀테크 스마트 고교육성 및 확산’ 등 3개의 사업은 사업추진 1년만에 교육부의 대응투자 요청으로 금번 예산안에 자체재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물론 장기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있어 교육청이 자체예산을 부담하는 것은 해당 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정착을 위하여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 그러나 교육청이 정부의 정책의 변경이나 사업의 필요성 감소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조건적으로 사업유지를 위해 대응투자 금액을 증액하는 것은 교육청의 정책사업 추진의 자율성을 경직시킬 뿐만 아니라 사업 추진 의지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기존의 특별교부금으로 추진된 사업이라 할지라도 사업이 정착되었다고 판단되거나 사업의 효율성이 낮다고 판단될 경우 감액교부된 사업에 대해 대응투자를 신중히 제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코로나19 상황 속 국외연수 사업 예산 편성

(단위 : 천원)

주관부서	세부사업명	사업명	예산액
총무과	지방공무원연수지원	국외연수(자기주도적 기획 연수)	150,000
총무과	지방공무원연수지원	장기국외훈련	134,000
예산담당관	예산관리	지방교육재정운영선진사례연구	12,900
참여협력담당관	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지원	국제교류업무추진	40,000
참여협력담당관	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지원	국제교류활성화지원	10,000
초등교육과	교육자료개발보급	교육과정담당교원연수(초)	4,000
초등교육과	교원연수운영	초등교원연수지원	37,500
중등교육과	교육자료개발보급	교육과정담당교원연수(중)	4,000
중등교육과	교육자료개발보급	교육과정담당교원연수(고)	2,000
중등교육과	교원연수운영	중등교원연수지원	37,500
중등교육과	교육과정운영지원	제2외국어교육활동지원	15,000
진로직업교육과	취업역량강화	특성화국제화교육지원	15,000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구운영지원	교육연구개발지원	15,000
계			476,900

- 서울시교육청은 선진 교육정책 체험과 우수 사례 발굴 등을 위한 국외연수 사업을 매년 실시하고 있고, 2022년에도 각 사업안에 국외연수 및 국외여비 등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 금번 세출예산안의 지방공무원 및 교원 대상 국외연수비 등은 4억 7천 7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국외연수 등의 사업은 외국의 선진 교육정책을 경험하고 벤치마킹하여 교육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고 교육행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긍정적 효과와 상황 개선의 가능성을 이유로 2021년에도 각종 국외 연수 등의 사업예산이 본예산에 편성된 바 있으나, 코로나19의 확산 및 장기화에 따라 이러한 국외연수 사업은 추진되지 못하였고, 관련 예산은 추경을 통해 감액된 바 있습니다.

- 이처럼 아직까지 코로나19 위기상황이 종식되지 않았고, 2022년에도 코로나 19의 종식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향후 불확실성에 근거한 예산의 편성은 불용가능성을 고려한 예산의 편성으로 예산의 건전재정 운용의 원칙을 훼손한다 할 것입니다.
- 더욱이 해당 사업 추진이 시급성을 갖고 있는 사업이 아니라면 내년도 상황을 지켜보고 추경을 통해서도 사업 추진의 가능성이 있는 만큼, 서울시 교육청은 국외연수 예산의 삭감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5) 세부사업에 대한 산출기초의 약식화

주관부서	사업명	산출기초
예산담당관	반환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비및기타 51,989,193 천원 - 학교신설(신길중) 2,722,000원×1교 = 2,722 천원 - 학원과태료반환 5,274,000원×1식 = 5,274 천원 - 광역자치단체보조금반환 11,345,261,000원×1식 = 11,345,261 천원 - 국고보조금반환 12,164,818,000원×1식 = 12,164,818 천원 - 기초자치단체보조금반환 5,195,651,000원×1식 = 5,195,651 천원 - 기타반환금 23,275,467,000원×1식 = 23,275,467 천원
중등교육과	교과교실제 시설비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회계전출금 2,191,000 천원 - 시설비 2,191,000,000원×1식 = 2,191,000 천원
중등교육과	수학교육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비 232,850 천원 - 4단계MathUp운영비 4,500,000원×22기관 = 99,000 천원 - 메타버스구축운영 50,000,000원×1식 = 50,000 천원 - 선도학교운영수당 (40,000원+10,000원)×5명×10회 = 2,500 천원
평생교육과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형자산 3,400,000 천원 - 도서구입비 3,400,000,000원×1식 = 3,400,000 천원

- 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4조의247)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를 첨부해야 하며, 이 때 예산의 편성은 합리적

47) 제44조의2(예산안의 첨부서류) ①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다만, 수정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재정운용상황개요서
2. 세입·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
3. ~ 14. (생략)

기준에 따라 경비를 객관적으로 계상해 편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⁴⁸⁾).

- 더욱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훈령 제200호) 및 「2022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계획」 등에 따르면 사업예산은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할 뿐만 아니라, 사업별 목적과 용도 그리고 추진계획 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아니하고 예산을 포괄적으로 할당하여 편성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금년도 예산안 중 일부 사업들은 그 산출기초가 ‘1식’이라는 형태로 매우 모호하게 포괄적으로만 되어있는바, 이와 같은 산출기초는 실제 해당사업이 어떤 기준과 단가를 근거로 사업 규모가 정해진 것인지 판단할 수 없어 의회의 예산안 심의 권을 저해한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예산안은 사업의 목적에 따라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추계하여 편성되어야 할 것인바, 서울시교육청은 예산안 제출시 사업에 대한 정확한 산출기초가 제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8) 제36조(예산의 편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 현실에 맞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수입·세출의 항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도록 예산을 계상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사. 실·국별 주요사업 검토

1) 총무과

가) 직원후생복지지원(예산안 209쪽, 사업설명서 159쪽)

(단위: 천원)

구분	2022년도	2021년도		전년 대비 증감	
	본예산 (A)	본예산 (B)	추경예산 (C)	본예산 (A-B)	추경예산 (A-C)
계	81,300	81,300	47,200	-	34,100
직원체육대회	12,520	12,520	좌동	-	좌동
직장동호회지원	28,200	28,200	14,100	-	14,100
체육의날행사지원	40,000	40,000	20,000	-	20,000
후생복지심의위원회	580	580	좌동	-	좌동

- ‘직원후생복지지원’ 사업은 체육대회와 동호회, 체육행사지원 및 후생복지 심의위원회와 관련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금년도 예산안에는 전년도 본예산과 동일한 수준인 8천 1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추경예산 대비 3천 4백만원 증액된 것입니다.
- 동 사업은 교육청 소속 지원들의 취미와 여가의 활성화와 활기찬 조직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그 필요성은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 그러나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으며 재확산 등의 우려가 상존하는 상황에서 전년도와 동일한 전례답습적인 예산 편성은 예산의 불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할 것입니다.
- 더욱이 금년도 동 사업예산이 1차례 추경을 통해 감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집행률은 43%에 불과한 수준인바, 올해에도 사업비 중 57%가 불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인바, 현재까지의 사업집행률을 고려하여 삭감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사업의 추진 가능성을 제고하는 한편, 불요불급한 사업이 아니라면 내년도 상황을 고려해 추진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적 이용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표-38] 2021년도 직원후생복지지원 예산 불용예상액⁴⁹⁾

(단위: 천원)

재원	본예산	추경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예정액	불용예상액
자체재원	81,300	△34,100	47,200	580	15,000	31,620

2) 기획조정실

가) 반환금-예산담당관(예산안 1,574쪽, 사업설명서 350쪽)

(단위: 천원)

구분	2022년도	2021년도		전년 대비 증감	
	본예산 (A)	본예산 (B)	추경예산 (C)	본예산 (A-B)	추경예산 (A-C)
계	51,989,193	65,130	94,334,573	51,924,063	△42,345,380
반환금	51,989,193	65,130	94,334,573	51,924,063	△42,345,380

- 반환금은 국고보조금 및 서울시 및 자치구 등의 보조금 집행 후 불용된 예산을 반납하는 것으로, 금번 예산안에 편성된 반환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519억 2천 4백만원 증액된 519억 8천 9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반환금은 이미 수령한 보조금 등의 정산이 이루어진 후 남은 금액을 반납하는 세출로서 사업의 지연 및 불용 발생, 그리고 과태료 등의 제재금 수입에 대한 과오납 반환 등 결산을 통해서만 그 반환예산 규모가 정확히 파악될 수 있습니다.

49) 서울시교육청 교육재정과-23340(2021.11.11.) 자료 중 2021년 사업별 추진실적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자료임.

- 따라서 동 예산안 사업설명서에 표기된 2021년도 본예산 기준 반환금도 2019년도에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받은 초등스포츠강사연수비의 집행잔액 6천 5백만원이 편성된 것이며, 추경을 통해 증액된 943억 3천 5백만원 역시 2020년도에 서울시 및 국고로부터 지원받은 각종 사업추진이 코로나 19 장기화로 취소되면서 발생한 불용 예산이 금번에 편성된 것입니다.
- 이처럼 반환금은 사업집행 후 결산을 통해 그 규모가 결정되는 것으로 예산안 편성시 구체적 불용사유가 제시되고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나, 서울시교육청은 금번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사업설명서에 이에 대한 구체적 산출기초 없이 단순히 재원별로 반환금액만을 명기하고 있어 어떠한 근거로 반환액이 결정되었는지를 파악할 수 없도록 제출되었습니다.
-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국고 및 자치단체의 보조금 반환액의 4개년 평균액을 통한 산출액이라고는 밝히고 있으나(교육재정과-23340),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2021년도 예산 집행률 자료에 따르면 현재(2021.11.1.기준) 국고보조금과 서울시전입금의 규모는 2,986억 5천만원이며 이 중 이월 및 집행예정액을 제외한 불용액은 최대 134억 5천 2백만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 따라서 반환금의 범위는 과오납과 기타 학교 신설에 따른 불용액 등 8백만원을 포함해도 최대 약 135억원 수준일 것으로 보이는바, 금번에 편성된 519억원은 과도한 것으로 사료되어 이에 대한 감액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그러나 이 역시 2021년도 결산을 통해 정확한 예산 규모가 결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사업비는 금번에 편성하기 보다는 결과가 확정된 후 추경을 통해 반영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표-39] 보조금 등 외부재원 불용예상액⁵⁰⁾

(단위 천원)

재원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예정액 ⁵¹⁾	불용예상액
국고보조금	40,112,799	23,103,494	16,971,575	37,730
서울시전입금	258,536,758	173,245,568	71,876,745	13,414,445
합 계	298,649,557	196,349,062	88,848,320	13,452,175

[표-40] 반환금 세부 산출내역⁵²⁾

(단위 천원)

사업명	예산액	반환사유
국고보조금반환	12,164,818	외부재원 4개년 반환금 평균액
광역자치단체보조금반환	11,345,261	외부재원 4개년 반환금 평균액
기초자치단체보조금반환	5,195,651	외부재원 4개년 반환금 평균액
기타반환금	23,275,467	외부재원 4개년 반환금 평균액
학원과태료반환	5,274	과오납 과태료 반환
학교신설(신길중)	2,722	구청(영등포구청) 준공정산 잔액 반환
계	51,989,193	

나) 서울형몽실학교-참여협력담당관(예산서 671쪽, 사업설명서 486쪽)

(단위 천원)

구분	2022년도	2021년도		전년 대비 증감	
	본예산 (A)	본예산 (B)	추경예산 (C)	본예산 (A-B)	추경예산 (A-C)
계	15,562,416	13,434,236	17,502,736	2,128,180	△1,940,320
서울형혁신교육지구운영	13,706,842	13,148,786	13,168,786	558,056	538,056
서울형혁신교육지구운영 역량강화	1,782,074	226,000	436,000	1,556,074	1,346,074
서울형몽실학교	600,000	-	3,000,000		
서울형혁신교육지구 협업체운영	73,500	59,450	59,450	14,050	14,050

50) 서울시교육청 교육재정과-23340(2021.11.11.) 자료 중 2021년 사업별 추진실적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자료임.

51) 이월액 포함

52) 서울시교육청 예산담당관-9509(2021.11.15.)

-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에 포함된 서울형몽실학교는 학교의 공간을 일과 중에는 학생들의 전용공간으로 활용하고 방과후와 주말에는 청소년과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하여 방과후 프로젝트 및 주민을 위한 배움 공간으로 폭넓게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번 예산안에 6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금번 예산안에 편성된 사업예산은 시설 구축이 아닌 ‘몽실학교’의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은 이미 선정된 3개학교(오류중, 방학중, 양서중) 이외에 아직 선정조차되지 않은 1개교에 대한 운영비까지 포함하여 금번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 이처럼 사업대상도 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설구축 비용도 아닌 운영비를 추가 편성한 것은 불요불급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한정된 교육예산의 효용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예산의 건전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예산편성으로 보이는 바 1개교에 대한 운영비는 삭감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 입학준비금-참여협력담당관(예산서 656쪽, 사업설명서 506쪽)

(단위: 천원)

구분	2022년도	2021년도		전년 대비 증감		본예산 대비 주요 증감 사유
	본예산 (A)	본예산 (B)	추경예산 (C)	본예산 (A-B)	추경예산 (A-C)	
계	43,048,296	33,343,970	42,708,470	9,704,326	339,826	
입학준비금	30,183,948	21,220,700	30,221,110	8,963,248	△37,162	◦제로페이 수수료를 인하 (1.1% → 0.66%)
입학준비금 (서울시전입금)	12,864,348	12,123,270	12,487,360	741,078	376,988	

- 입학준비금은 중, 고 1학년 신입생들에게 입학준비에 필요한 물품을 자율적으로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으로, 금번 예산안에 편성된 입학준비금은 430억 4천 8백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97억 4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학생수 감소(142,168명→142,000명)와 제로페이 운영수수료율 인하(1.1%→0.66%)에도 불구하고 입학준비금지원을 위한 기간제 인건비가 증액됨에 따른 것입니다.

- 이와 같은 입학준비금은 내년부터 사용범위가 의류와 스마트기기에서 물품으로 확대(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3948, 2021.10.12.)됨에 따라 학생들의 입학준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교육청은 올해 8월부터 서울시 및 자치구와 입학준비금에 대해 논의를 시작하고 대상을 초등학교로 확대하는 것에 합의를 이루었는바, 서울시와 자치구는 이러한 합의에 따라 각각 시의회와 구의회에 관련 예산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그러나 정작 주요 사업주체인 교육청은 금번 예산안에 초등학교 입학준비금 예산을 편성해 제출하지 않았는바, 이는 초등학교 입학준비금 지급에 있어 서울시교육청의 소극적 자세와 함께 주관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못한 것을 방증한다 할 것인 바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등학생들에 대한 입학준비금 지급은 초중고학생에 대한 복지 형평성과 교육복지체계의 완성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는바, 의회 심의과정에서 금번 예산안에 약 56억원의 재원을 추가 증액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표-41] 초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대상 규모⁵³⁾

(단위: 교, 명)

구분	공립		국립		사립		합계	
	학교수	학생수	학교수	학생수	학교수	학생수	학교수	학생수
초등학교	564	65,596	2	204	38	3,724	604	69,524
특수학교	11	111	3	25	14	135	28	271
각종학교	0	0	0	0	1	5	1	5
계	575	65,707	5	229	52	3,859	632	69,795

53) '초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기본계획(안)', 서울시교육청 참여협력담당관, 2021.10.

[표-42] 초등학교 입학준비금 총 소요액 및 분담비율

대상	1인당 지원액	총 지원액	교육청		서울시		자치구		비고
			분담 비율	분담액	분담 비율	분담액	분담 비율	분담액	
초등학교 신입생	20만원	140억 (추계)	40%	56억	30%	42억	30%	42억	기준인원 69,800명

○ 그러나 초등학교 입학준비금을 실제 지원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편성뿐만 아니라, 조례 개정, 사회복지위원회의 사전협의 등 일련의 절차가 이행되어야 하는바,

서울시교육청은 사업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자세와 함께 사업추진을 위한 일련의 사전절차가 온전히 수행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표-43] 초등학교 입학준비금 관련 자치구별 조례 개정 및 예산 반영현황

(기준:2021.11.8.)

연번	자치구명	예산 편성 현황	비 고	추후 계획
1	종로구	○		
2	중 구	○		
3	용산구	○		
4	성동구	○		
5	광진구	○		
6	동대문구	○		
7	중랑구	○		
8	성북구	○		
9	강북구	○		
10	도봉구	○		
11	노원구	○		
12	은평구	○		
13	서대문구	○		
14	마포구	○		
15	양천구	○		
16	강서구	○		
17	구로구	○		
18	금천구	○		

19	영등포구	○		
20	동작구	○		
21	관악구	○		
22	서초구	○		
23	강남구	△	20만원 × 20% 편성	추후 10프로 추가 편성 예정
24	송파구	○		
25	강동구	△	20만원 × 20% 편성	추후 10프로 추가 편성 예정

라) 교원명예퇴직수당-노사협력담당관, 중등교육과(예산서 823쪽, 1580쪽, 사업설명서 383쪽, 1152쪽)

(단위 천원)

구분	2022년도	2021년도		전년 대비 증감		비고
	본예산 (A)	본예산 (B)	추경예산 (C)	본예산 (A-B)	추경예산 (A-C)	
계	158,000,000	113,775,489	58,975,489	44,224,511	99,024,511	
명예퇴직수당	127,200,000	82,975,489	30,175,489	44,224,511	97,024,511	◦ 교원 1,272명
사립학교교원 명예퇴직수당	30,800,000	30,800,000	28,800,000	-	2,000,000	◦ 교원 385명

- 금번 예산안에 편성된 교원명예퇴직수당은 공·사립학교 교원 1,657명을 기준으로 1,580억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이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442억 2천 5백만원(28%)이 증액된 것이며, 추경대비 970억 2천 5백만원(87%) 증액된 것입니다.
- 최근 3년간 교원의 명예퇴직 현황을 살펴보면([표-44]) 교원의 명예퇴직은 2019년도부터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중이며, 특히 2021년도에는 2020년도 대비 15%(239명) 감소하였고, 당시 수요조사에서 명예퇴직 의사를 밝힌 1,712명 중 1,354명만(79.1%)이 퇴직신청을 하고 퇴직이 확정되었습니다.
- 이처럼 교원의 명예퇴직 수요조사 대비 신청자가 감소한 것은 그동안 교

권추락 및 학부모 민원 증가 등의 이유로 명예퇴직을 하였던 것에 반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이러한 이유들의 발생빈도가 줄어들어 따른 것으로 사료됩니다⁵⁴⁾.

- 이처럼 교원의 명예퇴직 감소가 코로나19의 여파 때문이라면 현재의 코로나19 추이를 고려할 때 내년도의 명예퇴직도 금년도와 유사한 비율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바, 2022년 명예퇴직금에 대해서는 금년도 수요조사 대비 신청비율 수준(79.1%)을 적용하여 약 330억원을 삭감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표-44] 최근3년간 교원명예퇴직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2022년도				2021년도						2020년도						
	수요조사		예산안 반영		수요조사		신청		확정		수요조사		신청		확정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합계	1,637	156,000	1,657	158,000	1,712	166,154	1,354	120,437	1,354	120,437	1,650	164,100	1,593	150,048	1,593	150,048	
공립	유아	2	200	2	200	0	0	0	0	0	0	0	0	2	236	2	236
	초·중	600	60,000	610	61,000	603	61,506	422	39,242	422	39,242	604	61,608	583	58,177	583	58,177
	고·대	650	65,000	660	66,000	724	73,848	574	52,894	574	52,894	696	70,992	676	65,183	676	65,183
사립	고·대	385	30,800	385	30,800	385	30,800	358	28,301	358	28,301	350	31,500	332	26,452	332	26,452

54) 중앙일보, “코로나19에 학교 문 닫았더니...매년 늘던 교원 명퇴 줄었다”, 전민희 기자, 2021.4.7.일자 보도자료 참조.

3) 교육정책국

가) 수학교육여건개선 - 교육혁신과(사업별 설명자료 639쪽)

(단위: 천원)

구분	2022년도	2021년도		전년 대비 증감		본예산 대비 주요 증감 사유
	본예산 (A)	본예산 (B)	추경예산 (C)	본예산 (A-B)	추경예산 (A-C)	
계	552,000	-	좌동	552,000	좌동	
수학교육기반조성	552,000	-	좌동	552,000	좌동	◦ 2022 신규사업

- 수학교육여건개선은 지능정보기술 기반의 수학 수업 인프라를 개별 학교에 구축하여 학습자 중심의 수학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번 예산안에 5억 5천 2백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 그러나 동 사업의 경우 초등학교 607개교와 중학교 389개교 중 11개에 미래융합형 수학교실을 구축하는 것으로 소수의 초·중학교에 수학교실을 설치하는 것이 수학교육과정의 운영여건 개선에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더욱이 미래융합형 수학교실에 설치되는 교구와 시설은 이미 다수의 초·중·중학교에서 기구축되었거나 구축 예정인 전자칠판과 컴퓨터(태블릿 등)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전자칠판의 경우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공·사립 중학교 1학년 교실 전체(3,054학급)에 설치 예산이 편성되었고,⁵⁵⁾ 이미 관내 사립초등학교 40개교 중 23개교, 공립초등학교 563개교 중 246개교는 전자칠판이 운영되고 있으며⁵⁶⁾,

스마트기기의 경우에도 중학교 1학년부터 시작되는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⁵⁷⁾ 외에도 기보유한 태블릿PC가 초등학교만 6만여 대에 달하는 등⁵⁸⁾

55) 「물품관리」 사업 (2021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406~408pp)

56) 서울시의회 요구자료(요구번호 2240), '초등학교 전자칠판 현황'(제출일 2021.11.01.)

57) 「원격교육지원」 사업 (2021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230~233pp)

58) 서울시의회 요구자료(요구번호 2181), '초·중고등학교별 스마트기기 대여 및 구매 수요조사'(제출일 2021.10.19.)

상당부분 해당 기자재가 보급된 상황인 바 동사업의 시행에 따른 교육 여건의 개선은 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아울러 ‘수학점핑학교 사업’의 경우 전체 중학교를 대상으로 공학도구와 수학교구의 구입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 재원이⁵⁹⁾ ‘학교자율 사업 운영제’ 안에 이미 편성되어 있으므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동 사업과의 중복성 문제 또한 적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 따라서 동 사업 규모와 학교 현장의 ICT 인프라 구축 현황, 수학교구 구축을 지원하는 유사 사업의 존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동 사업의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사료되는 바, 동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표-44] 수학점핑학교와 미래융합형수학교실 구축 사업내용 비교

구분	수학점핑학교	미래융합형수학교실
정의	다양한 공학도구 및 수학교구를 활용한 온·오프 연계 체험·탐구 활동 중심 교육활동 운영으로 수학 기초 소양을 함양하고, 수학에 대한 정의적 영역 성취를 제고하는 모델학교	최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개인 맞춤형 탐구 교실로 에듀테크 기술에 기반하여 교구를 갖추고 학생 맞춤형 창의융합 수학 수업이 가능한 교실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참여활동중심 수학교육 운영, 교원역량 강화, 수학클리닉 운영, 학교 특성이 반영된 운영 사례 도출 - (유형 1) 인공지능(AI) 학습플랫폼을 기반으로 수학 학습 능력에 따른 맞춤형 학습 처방 집중 지원 - (유형 2) 교구 활용 활동 중심 프로그램 운영으로 수학 기초소양 함양 집중 지원 ※ 서울형 수학점핑학교 운영: 132교('21) → 중학교 전체('22~) 이상 지속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의식 개념학습 외 다양한 수업 방식을 통해 학생 참여 중심 수업을 구현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수업 중 교사 주도형 학습, 학생 협력형 학습, 개별 학습이 유연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가변적 공간 구성 - 체험·탐구 중심 수업·평가가 가능하도록 전자칠판, 컴퓨터(태블릿 등), 실물·가상의 수학교구, 3D 모델링 프로그램 등을 설치한 환경 구축

	대상교	학교 수	1차 지원 (2021.3.)	2차 지원 (2021.7.)	3차 지원 (2021.8.)			
					보유수량	대여수량	학교신청수량	지원수량
초	564	377,292	1,257	7,243	67,733	33,186	24,491	12,135
중	385	207,831	662	-	31,435	12,842	10,327	2,577
고	284	186,617	400	-	26,196	11,277	10,091	5,663
특	25	4,329	26	-	1,429	515	1,105	135
각종	9	756	24	-	195	41	91	60
총합계	1,267	776,825	2,369	7,243	126,988	57,861	46,105	20,570

※ 재정결함보조금 미지원교 및 국립학교 제외

59) 「학교혁신기획운영」 사업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730~738pp)

나) 생태전환교육내실화 - 교육혁신과(사업별 설명자료 676쪽)

(단위: 천원)

구분	2022년도	2021년도		전년 대비 증감		본예산 대비 주요 증감 사유
	본예산 (A)	본예산 (B)	추경예산 (C)	본예산 (A-B)	추경예산 (A-C)	
계	2,189,814	2,529,030	5,029,030	△339,216	△2,839,216	
생태전환교육역량강화	644,514	921,470	좌동	△276,956	좌동	◦ 생태전환중점 학교 운영 및 교 원연수운영 축소
생태전환교육운영지원	781,300	1,351,710	1,129,610	△570,410	△348,310	
생태전환실천문화확산	764,000	255,850	2,977,950	508,150	△2,213,950	

- 생태전환교육내실화는 기후위기와 환경재난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환경과 생명의 가치, 지속가능발전 등에 관한 학생의 인지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3억 3천 9백만원 감액된 21억 9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이 중 생태전환실천문화확산에 편성된 ‘실천단 운영 용역비’는 생태전환 교육 청소년실천단 사업의 일환으로, 기후위기 대응 교육과 예술(건축, 패션, 영화, 미술 등)을 융합한 어린이·청소년 기후예술학교 운영을 위해 총 3억 2천만원 규모로 4개 기관에 사업을 위탁하고자 편성된 예산입니다.
- 그러나 초·중·고교생을 중심으로 구성된 청소년실천단은 환경 캠페인과 SNS 홍보, 봉사활동 등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이러한 실천단이 기후예술학교를 운영할만한 충분한 역량과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기후예술학교 운영비를 청소년실천단 사업 예산으로 편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를 위탁하여 운영할 계획인 바, 이는 교육청에서도 동 실천단의 사업역량에 대해 한계를 인식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또한 동 사업의 경우 그 위탁 범위와 비용의 적정성은 차치하고라도 동

사업이 청소년실천단의 사업으로 적절한 것인지, 위탁을 하면서까지 학교 운영을 추진해야 하는 당위성이 무엇인지 불분명하고,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생태전환교육 중장기 발전 계획」에도 기후예술학교 사업과 관련된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에서 동 사업이 생태전환실천문화 조성에 얼마만큼의 연관성이 있는지도 의문이 있다 하겠습니다.

- 따라서 위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동 사업 규모를 대폭 축소하거나 사업 계획 전반에 대한 보완 이후에 예산을 편성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표-45] '학생운동 365'와 '어린이청소년 기후예술학교 운영' 사업내용 비교

구분	기후행동 실천 네트워크 '학생운동 365'	어린이.청소년 기후예술학교
사업내용	-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청소년들의 연대로 미래 세대가 실천하는 다양한 환경 관련 캠페인, 봉사활동 실시 및 SNS 활용 홍보 등의 활동 운영	- 기후위기 대응 교육과 예술(건축, 패션, 영화, 미술)을 접목한 어린이.청소년 기후 예술학교 운영으로 환경.예술 분야 청소년 진로 역량 강화 활동 운영

다) 서울유아교육지원계획수립 - 유아교육과(사업별 설명자료 804쪽)

(단위: 천원)

구분	2022년도	2021년도		전년 대비 증감		본예산 대비 주요 증감 사유
	본예산 (A)	본예산 (B)	추경예산 (C)	본예산 (A-B)	추경예산 (A-C)	
계	229,450	146,460	좌동	82,990	좌동	
교원업무정상화지원	-	2,600	좌동	△2,600	좌동	◦ 사업정비 폐지
교육과정정상화(홍보)	83,220	83,220	좌동	-	좌동	
서울유아 장학지원계획수립	21,720	28,440	좌동	△6,720	좌동	◦ 사업정비 통합 및 폐지 ◦ 인쇄비 30% 감액
유치원업무담당자워크숍	11,320	11,500	좌동	△180	좌동	◦ 인쇄비 30% 감액
자연친화교육활성화지원	113,190	20,700	좌동	92,490	좌동	◦ 지원확대 (2개원 → 11개원)

- 서울유아교육지원계획수립은 2022년도 서울유아교육 정책의 방향을 수립하고, 유아교육지원계획에 대한 유아교육전문직원의 이해를 높이며 유아교육단계에서의 생태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8천 3백만원 증액된 2억 3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이 중 1억 1천 3백만원이 편성된 “자연친화교육활성화지원”은 유아교육과정의 생태전환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자연친화교육 중점유치원’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 올해까지 2개원이던 중점 유치원을 11개원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그러나 2020년 자연친화교육 중점유치원으로 지정·운영된 2개원⁶⁰⁾의 운영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동 사업은 유치원 내 자투리공간을 활용한 수목 식재와 야외 쉼터 및 텃밭 조성 등으로 제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바, 동 사업을 5배 이상 급격히 확대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더욱이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에⁶¹⁾ 따라 유아 대상 산림교육을 지원하는 공간인 유아숲체험원이 이미 서울시 내 70개소에 조성되어 있는 상황⁶²⁾을 고려한다면 교육청이 유사한 사업을 별도로 추진하기보다는 개별유치원에서 유아숲체험원을 먼저 활용하도록 지

60) 2020년은 서울양재유치원과 세아유치원이 지정·운영되었고 2021년 운영에 대한 결과보고서는 금년 12월에 발표될 예정임.

61)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유아숲체험원의 등록 등) ① 유아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함으로써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도·교육하는 시설(이하 “유아숲체험원”이라 한다)을 조성·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하려는 자는 유아숲체험원의 명칭·소재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성하는 유아숲체험원: 산림청장

2. 법인 또는 개인이 조성하는 유아숲체험원: 시·도지사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행정기관의 장(산림청장은 제외한다)이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유아숲체험원의 시설과 인력 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가 그 등록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⑥ 시·도지사는 제2항제2호에 따른 등록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을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유아숲체험원의 등록 및 변경등록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2) 서울특별시 자연생태과, “2021년 유아숲체험장 조성 현황”, 작성일 2020.12.23.

<https://opengov.seoul.go.kr/public/21886385> (검색일 2021-11-14)

원하는 방안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동 사업은 급격한 외연 확대보다는 현재 있는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모색한 후 중장기적인 평가를 통해 사업을 순차적으로 확대가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9개원을 추가 지정하고자 하는 예산안 증액분에 대해서는 감액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라) 초등교원연수지원 - 초등교육과(사업별 설명자료 854쪽)

(단위 천원)

구분	2022년도	2021년도		전년 대비 증감		본예산 대비 주요 증감 사유
	본예산 (A)	본예산 (B)	추경예산 (C)	본예산 (A-B)	추경예산 (A-C)	
계	380,502	295,694	1,659,794	84,808	△1,279,292	
1정자격연수위탁교육비	8,992	8,644	좌동	348	좌동	◦ 시간당 단가 상승
교원대정책대학원연수	18,000	18,000	좌동	-	좌동	
교육경영자연수위탁교육	58,660	58,660	좌동	-	좌동	
교육전문직원 자비부담연수지원	74,750	71,890	좌동	2,860	좌동	◦ 교육전문직원 35명 증가
서울교대정책대학원연수	20,000	20,000	좌동	-	좌동	
서울교육연구년제	76,500	76,500	좌동	-	좌동	
초등비교과자격연수	73,600	42,000	73,500	31,600	100	◦ 연수비 단가 및 대상 자 (60→92명) 증가
치유회복연수지원	50,000	-	좌동	50,000	좌동	◦ 타당성조사 용역비 증액
교원회복력지원 마음방역연수	-	-	1,332,600	-	△1,332,600	◦ 2021년 한시적 사업

- “초등교원연수지원” 사업은 초등학교 교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원연수와 현장 중심 학교 지원활동을 위한 교육전문직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8천 5백만원이 증액된 3억 8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이 중 편성된 “치유회복연수지원”은 서울시교육청 소속 교직원과 교육공무원 등의 사기 진작과 회복지원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연수원 건립의 타당성 용역을 위한 예산으로, 금년에 5천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 그러나 연수원 건립 계획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 기준」 제5조제2항에 규정된 [별표 4]에 따라 예산과목(목그룹) 설정 시 ‘건설비’로 편성해야 함에도 ‘운영비’로 편성, 제출되었는바, 동 사업의 예산 집행을 위해서는 예산과목의 전용이 선행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의회에 예산서를 제출함에 있어 동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부서와 이를 사정하는 예산분서에서의 안이한 예산편성과 사정에 대해서는 의회차원에서 엄정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표-46]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 원가통계목 비교(운영비, 건설비)

세목	운영비(210)			420(건설비)		
원가 통계목	210-13 용역사업비	관리 용역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사의 시설관리 또는 장비의 유지관리, 전산 운영 등 기관의 운영 과정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유지관리 업무를 용역 계약을 통해 외부에 대행시키는 비용 ※ 개별법령 또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거 자치단체가 시행해야할 주요사무를 외부에 민간 위탁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금(320-02)목으로 계상하고, 유지관리업무가 아닌 행사 등 일반 업무에 대한 대행 용역은 일반용역비에 계상 	420-01 기본조사 설계비	사전 조사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계획을 기초로 하여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조사 및 교통·환경 영향평가에 소요되는 경비
		일반 용역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채용, 영상자료 제작 등의 일반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 ※ 법률적 의미의 민간위탁과 법정대행, 정책개발 및 그 외 일반 조사 연구, 장비, 시설물 등의 유지보수관리가 아닌 기타 업무의 대행을 위한 용역비 		기본 설계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설계 시행지침, 예비설계, 기본설계 및 개략 공사비 산정에 소요되는 경비

○ 또한 동 예산안에서는 연수원건립을 위한 타당성 용역비를 교육비특별회계를 통해 편성 제출하였는 바, 연수원 건립은 지난해 8월 수립된 「서울

교육가족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평창치유·회복연수원(가칭) 설립 기본계획안(초등교육과-12603, 2020.8.31.)」과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설치·운영 조례」에 따라 별도 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임을 고려할 때, 동 예산 역시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으로 편성하는 것이 적합한⁶³⁾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동 예산은 편성 시부터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점과 연수원 건립을 위한 기금이 별도로 운영 중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동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고 동 기금에 편성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또한 동 연수원의 건립 계획이 수립된 지 6년이 지났으나 교육청은 현재까지 연수원의 사업부지 조차 선정하고 있지 못한 상황인 바, 동 사업에 대한 교육청의 추진의지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현재 연수원 운영 목적이 “교원의 휴식과 연수 공간 마련”에서 “교육공무직과 행정직원을 포함한 서울시교육청 소속 교직원 등의 회복력 지원”으로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초등교원 연수 담당 부서가 동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 지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표-47] 서울시교육청 연수원 건립 추진 경과

추진일정	추진내용
2015.9.8.	서울교육가족을 위한 회복력지원 연수원 건립 추진 계획 수립
2016.7.7.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설치·운영 조례 공포
2016.10.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의원 12명 해당 부지 방문 : 부적절 의견
2017.4. ~ 7.	대체부지 검토 및 제주회복력지원연수원 건립부지 검토 결과 보고

63)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설치·운영 조례」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1. 건축비 및 토지매입비
 2. 설계비 및 감리비
 3. 그 밖에 부대시설비 등 건립에 필요한 경비

2018.1.23.	제주평화힐링연수원 설립 기본 계획
2019.3.	서울시교육청 재정투자심사(1차) : 재검토
2019.7.	서울시교육청 재정투자심사(2차) : 조건부 승인
2019.9.	교육부 중앙재정투자 심사 : 부적정(사업계획 전면 재검토)
2020.8.	연수원 대체 입지 집중 검토(평창, 영월, 가평) 후 '평창'으로 대체입지 확정
2020.12.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존속기한 연장('20.12. → '25.12.)을 위한 개정 조례 공포

마) 안성맞춤교육과정운영지원 - 초등교육과(사업별 설명자료 965쪽)

(단위 천원)

구분	2022년도	2021년도		전년 대비 증감		본예산 대비 주요 증감 사유
	본예산 (A)	본예산 (B)	추경예산 (C)	본예산 (A-B)	추경예산 (A-C)	
계	5,095,250	4,726,240	좌동	369,010	좌동	
안성맞춤교육과정 놀이환경조성	3,908,300	4,057,000	좌동	△148,700	좌동	◦ 서울시지원금으로 증액한 교당 단가만큼 감소(8교)
안성맞춤교육과정지원 네트워크운영	886,800	669,240	좌동	217,560	좌동	◦ 네트워크 운영교 증가
어린이날100주년기념행사	300,150	-	좌동	300,150	좌동	◦ 신규사업

- “안성맞춤교육과정운영지원”은 초등학교 1~2학년에서 실시되는 안정과 성장 맞춤 교육과정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설 개선과 교원 연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3억 6천 9백만원이 증액된 50억 9천 5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동 사업 중 “안성맞춤교육과정지원네트워크운영”은 “네트워크 운영교 증가”를 이유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억 1천 8백만원이 증액되었으나, 2021년도 예산과 기제출된 예산안의 산출내역을 비교했을 때 1개 학교 당 지원금은 60%나 증가하고, 지원팀은 300개교에서 50개교 감소한 250개교로 감소하였습니다.
- 또한,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2021 교육지원청 꿈쟁 네트워크 공모

학교 현황」에 따르면, 금년도 꿈잼 네트워크 참여 학교는 총 315개교 402개팀으로, 당초 300개교에 2백만원씩 지원하겠다는 2021년 예산의 산출내역보다 더 많은 학교에 예산이 지출되었습니다.

- 동 사업의 증액 사유는 사업별 설명자료에 제시된 바와 같이 “꿈잼네트워크 운영 팀 증가”가 아닌 “학교별 지원 단가의 상승”이 주된 원인으로서 의회에 제출한 예산 산출내역과 실제 사업이 다르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 교육청이 실제 예산 산출내역과 사업 운영을 달리 하는 행위는 의회의 예산심의 과정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중 경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불분명한 사유로 증액된 예산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표-48] 2021년 예산과 2022년 예산안에서의 사업 예산 산출내역

구분	‘안성맞춤교육과정네트워크 운영’ 관련 산출 내역	
2021년 예산	· 운영비	64,640 천원
	- 원고료(본청)	10,000원×10매×10명×4회 = 4,000 천원
	- 원고료(지원청)	10,000원×10매×4명×11청 = 4,400 천원
	- 인쇄비(본청)	5,000원×1,500부×2회 = 15,000 천원
	- 인쇄비(지원청)	3,000원×200부×1회×11청 = 6,600 천원
	- 네트워크 운영비(본청)	1,000,000원×4회 = 4,000 천원
	- 네트워크 운영 설명회 강사수당(본청)	160,000원×10명×4회 = 6,400 천원
	- 강사수당(지원청)	160,000원×4명×1회×11청 = 7,040 천원
	- 네트워크 운영수당(본청)	150,000원×5명×4회 = 3,000 천원
	- 운영수당(지원청)	50,000원×12명×11청 = 6,600 천원
	- 시설임차료(본청)	1,400,000원×4회 = 5,600 천원
	- 사무용품비(본청)	500,000원×4회 = 2,000 천원
	· 업무추진비	4,600 천원
	- 사업추진경비(본청)	20,000원×30명×4회 = 2,400 천원
	- 사업추진경비(지원청)	20,000원×5명×2회×11청 = 2,200 천원
	· 학교회계전출금	600,000 천원
- 목적사업비(학교)	2,000,000원×300교 = 600,000 천원	
2022년 예산(안)	· 운영비	82,200 천원
	- 강사수당(본청)	160,000원×10명×2회 = 3,200 천원
	- 강사수당(지원청)	160,000원×4명×2회×11청 = 14,080 천원

- 사무용품비(본청)	500,000원×4회	=	2,000	천원
- 시설임차료(본청)	1,400,000원×4회	=	5,600	천원
- 운영수당(본청)	(40,000원+10,000원)×20명×12회	=	12,000	천원
- 운영수당(지원청)	50,000원×12명×2회×11청	=	13,200	천원
- 원고료(본청)	10,000원×10매×10명×4회	=	4,000	천원
- 원고료(지원청)	10,000원×10매×4명×2회×11청	=	8,800	천원
- 인쇄비(본청)	5,000원×1,050부×2회	=	10,500	천원
- 인쇄비(지원청)	1,500원×140부×2회×11청	=	4,620	천원
- 행사용품비(본청)	1,050,000원×4회	=	4,200	천원
· 업무추진비			4,600	천원
- 사업추진경비(본청)	20,000원×30명×4회	=	2,400	천원
- 사업추진경비(지원청)	20,000원×5명×2회×11청	=	2,200	천원
· 학교회계전출금			800,000	천원
- 목적사업비(학교)	3,200,000원×250교	=	800,000	천원

바) 원격교육지원 - 중등교육과 (사업별 설명자료 996쪽)

(단위 천원)

구분	2022년도	2021년도		전년 대비 증감		본예산 대비 주요 증감 사유
	본예산 (A)	본예산 (B)	추경예산 (C)	본예산 (A-B)	추경예산 (A-C)	
계	55,273,800	457,760	62,707,450	54,816,040	△7,433,650	
디지털기반학생맞춤형 교수학습지원	54,988,410	81,750	62,331,440	54,906,660	△7,343,030	
원격교육네트워크 구축운영	285,390	336,010	좌동	△50,620	좌동	
초등학생원격교육환경만 족도조사	-	20,000	좌동	△20,000	좌동	
학부모원격교육환경 만족도조사	-	20,000	좌동	△20,000	좌동	

○ “원격교육지원”은 원격수업 및 온·오프라인 혼합수업(블렌디드 러닝)의 학교 현장 안착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미래교육으로의 변화를 위한 수업 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2021년 본예산 대비 548억 1천 6백만원이 증액된 552억 7천 4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이 중 549억 8천 8백만원이 편성된 “디지털기반학생맞춤형교수학습지

원”은 편성 예산의 94.1%인 517억 3천 4백만원이 2023년도 중학교 신입생에게 스마트기기를 구입·보급하기 위한 예산으로 정책 확대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⁶⁴⁾

□ **중장기적인 관리방안의 부재로 인한 예산 낭비 우려**

- 먼저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동사업의 사업계획을 살펴보면 구입한 기기의 보급에만 집중할 뿐, 정작 동 기기의 유지·관리 방안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스마트기기 휴대 학습 「디벗」 종합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에 따르면, 중학교 1학년에 입학하는 학생이 3년 간 태블릿PC를 대여한 이후 기기의 회수 및 관리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더욱이 실행계획의 붙임문서로 제공된 「「디벗」이 궁금해요, 하나에서 열까지」에서도 “디벗은 학교에 등록된 물품이지만, 폐기(사용연한 5년) 되기 전까지 학생이 관리하며 사용할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으며, “현재 다양한 방법으로 서울시교육청 관내에서 반납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⁶⁵⁾
- 이러한 운영 방식은 동 사업이 학교 소유의 스마트기기를 학생에게 대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사실상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에 따라 관리되는 스마트기기를 학생 개인에게 이전하는 행위로 볼 수 있으며, 이는 「공유재산법」 제3조의2가⁶⁶⁾ 규정하는 물품

64) 2022년 3월에 입학하는 학생에 대한 스마트기기 대여 지원 예산은 2021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이미 편성된바 있음.

65) 「[Q&A]「디벗」이 궁금해요, 하나에서 열까지」, 학생·학부모용 질문 목록 14번.

14. (졸업) 학생이 졸업할 때 디벗을 반납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디벗은 학교의 등록된 물품이지만, 폐기(사용 연한 5년) 되기 전까지 학생이 관리하며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현재 다양한 방법으로 서울시교육청 관내에서 반납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66)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조의2(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처분의 기본원칙)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관리·처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관리·처분의 기본원칙에 위배될 소지도 있습니다.

- 더욱이 스마트기기의 회수뿐만 아니라 유지·보수에 있어서도 교육청의 실행계획은 하자보수 및 이용지원 기간이 종료되는 3년 이후부터의 대책 또한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 「물품관리법」 제16조의2에⁶⁷⁾ 따르면 태블릿PC의 내용연수는 5년(노트북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6년)이지만,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사업자에게 부여한 부품보유기간은 4년이고,⁶⁸⁾ 실행계획 상 하자보수 및 이용 지원 기간은 3년에 불과합니다.
- 결론적으로 서울시교육청은 동 사업처럼 일시에 대규모로 스마트기기를 구매하는 사업을 전개함에 있어 납품 업체의 유지·보수기간이 종료되는 시점부터 해당 물품의 내용연수 도과 전까지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해 명확한 지침과 기준을 제시하여야 하나 그렇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다.

□ 중·고등학교 입학준비금과의 중복지원 문제 해소 필요

- 또한 동 사업은 중·고등학교⁶⁹⁾ 신입생에게 지원되는 ‘입학준비금’ 과

1.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이익에 맞도록 할 것
2.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룰 것
3.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할 것
4.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를 것

67) 「물품관리법」

제16조의2(물품의 내용연수) ① 조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중앙관서(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며 관리가 필요한 물품에 대한 내용연수(耐用年數)를 정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내용연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 내용연수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 관서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1항에 따라 정하여진 내용연수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장과 협의하여 내용연수를 조정할 수 있다.

68)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3조(품목 및 보상기준) 이 고시에서 정하는 대상품목, 품목별분쟁해결기준, 품목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품목별 내용연수표는 각각 별표 I, 별표 II, 별표 III, 별표 IV와 같다.

[별표 3] 품목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품 목	품질보증기간	부품보유기간
5. 가전제품, 사무용기기, 전기통신기자재, 광학기기, 주방용품 등 1) 완제품 - 데스크탑(완성품) 및 주변기기, 노트북, 태블릿, 휴대용 음향기기(MP3, 카세트, CD플레이어)	○ 1년	○ 4년

69) 중·고등학교 과정 또는 중·고등학제에 해당하는 특수학교와 각종학교를 포함

사업이 중복될 소지가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교육청 중·고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제5조제3항은⁷⁰⁾ 입학준비금의 용도를 교복과 원격 학습에 필요한 스마트 기기 등 교육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물품에 한정하고 있으며, 2021년 입학준비금 운영 계획 역시 구매 가능 품목은 등교에 필요한 의류와 스마트기기 (태블릿PC, 노트북)로 제한하고 있습니다⁷¹⁾.
- 따라서 별도의 대책이 없는 이상 입학준비금으로 태블릿PC를 구입한 학생이 다시 「디벗」 사업을 통해 태블릿PC를 대여 받는다면 이중 지원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 이러한 중복지원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동 사업의 추진에 앞서 「서울특별시 중·고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구매대상에서 스마트기기를 제외하거나 입학준비금으로 스마트기기를 구입한 경우 해당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의 조치가 선행되어야 하나 제도적 준비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확대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 따라서 예산 심의시 동 사업이 추진되어온 과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동 사업의 지속성 여부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70) 「서울특별시교육청 중·고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제5조(지원 방법 등) ①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 등 입학준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입학준비금을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입학준비금은 교복, 원격학습에 필요한 스마트기기 등 직·간접적으로 교육활동에 필요한 물품의 구입에 사용되어야 한다. 다만 입학준비금의 구체적인 사용 범위는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71) 서울시교육청 참여협력담당관, “2021년 중·고등학교 입학준비금 안내”

□ 사용 범위: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중·고 신입생의 교육 준비에 필수적인 물품으로 제한

구분	의류	스마트기기
구매범위	교복, 생활복, 체육복, 일상 의류(등교에 필요한 의류)	태블릿 PC (노트북 포함) 원격수업에 필요한 스마트 기기
비고	교복 구매 시 학교별 학칙에서 정한 교복 형태에 따라 추진	온라인 수업, 과제용 등록된 제로페이 가맹점을 방문하여 구매 가능

사) 영어교육내실화지원 - 중등교육과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1081쪽)

(단위: 천원)

구분	2022년도	2021년도		전년 대비 증감		본예산 대비 주요 증감 사유
	본예산 (A)	본예산 (B)	추경예산 (C)	본예산 (A-B)	추경예산 (A-C)	
계	274,200	520,200	좌동	△246,000	좌동	
TEF활성화	60,200	60,200	좌동	-	좌동	
영어독서동아리지원	-	60,000	좌동	△60,000	좌동	◦ 교육부 특별교부금 감액으로 인해 학교자 율사업 운영제로 전환
영어독서동아리지원 (특별교부금)	-	60,000	좌동	△60,000	좌동	
중등국제수업교류운영	27,000	15,000	좌동	12,000	좌동	◦ 교육부 특별교부금 감액으로 인한 일반재 원 증액
중등국제수업교류운영 (특별교부금)	3,000	15,000	좌동	△12,000	좌동	
중등영어교사단기연수	16,000	-	좌동	16,000	좌동	◦ 교육부 특별교부금 감액으로 인한 일반 재원 편성
중등영어교사단기연수 (특별교부금)	4,000	20,000	좌동	△16,000	좌동	
초등학교영어놀이터 프로그램운영	33,000	-	좌동	33,000	좌동	◦ 교육부 특별교부금 감액으로 인한 일반재 원 편성
초등학교영어놀이터 프로그램운영(특별교부금)	11,000	110,000	좌동	△99,000	좌동	
초등학교영어캠프비지원	111,000	90,000	좌동	21,000	좌동	◦ 교육부 특별교부금 감액으로 인한 일반재 원 증액
초등학교영어캠프비지원 (특별교부금)	9,000	90,000	좌동	△81,000	좌동	

- “영어교육내실화지원”은 영어 교과 담당 교사의 역량 강화와 영어교육 격차 완화, 의사소통 및 체험 중심의 영어교육 활성화 등을 위해 영어 수업과 평가방법 개선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해 본예산 대비 2억 4천 6백만원이 감액된 2억 7천 4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그러나 동 사업중 중등국제수업교류운영과 중등영어교사단기연수, 초등학교영어놀이터프로그램운영 및 초등학교영어캠프비지원 등은 교육부 특별교부금의 감액을 이유로 일반예산을 증액시키고 있는 바, 이러한

형태의 사업비 증가는 장기적으로 교육청의 재정부담만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통해 사업의 지속성 여부 및 규모 축소 등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특히, 2021년 예산 대비 학교 당 지원금이 교당 1천만원에서 4백만원으로 절반 이상 감소한 ‘초등학교 영어놀이터 프로그램 운영’은 영어 학습 공간 조성이라는 사업 특성을 고려할 때 규모 축소에 따른 부실 운영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굳이 자체재원을 투입하여 무리하게 줄속으로 진행하기보다 사업 폐지에 대해 적극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 영어회화전문강사배치 - 중등교육과 (사업별 설명자료 1091쪽)

(단위 천원)

구분	2022년도	2021년도		전년 대비 증감		본예산 대비 주요 증감 사유
	본예산 (A)	본예산 (B)	추경예산 (C)	본예산 (A-B)	추경예산 (A-C)	
계	10,589,755	11,683,298	11,483,331	△1,093,543	△893,576	
영어회화전문강사 배치및관리	9,106,755	9,723,621	좌동	△616,866	좌동	◦ 영어회화전문강사 인원수 감소 (294명→264명)에 따른 인건비 감액
영어회화전문강사 배치및관리 (특별교부금)	1,483,000	1,959,677	1,759,710	△476,677	△276,710	

- “영어회화전문강사 배치”는 영어구사능력이 우수한 인적자원을 확보하여 학습자 수준별 맞춤형 영어 수업을 실시하기 위한 사업으로, 영어회화 전문강사 인원이 감소함에 따라 전년도 본예산 대비 10억 9천 4백만원이 감액된 105억 9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이 중 “영어회화전문강사배치및관리”에 편성된 이행강제금 납부료 4억원은 「근로기준법」 제33조에⁷²⁾ 따라 영어회화전문강사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지역 노동위원회나 중앙노동위원회에 접수되어 이행강제금 납부 명령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납부하기 위해 편성된 것입니다.⁷³⁾
- 그러나 2021년 11월 현재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한 영어회화전문강사 관련 부당해고 등의 구제 신청이 없는 상황에서⁷⁴⁾ 구제 신청의 발생 가능성만으로 편성된 예산으로서 향후 발생여부가 불확실한 사실에 기초하여 예비적 성격의 사업비를 편성하는 것은 예산의 건전성에 위배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따라서 예산안에 편성된 이행강제금 납부료는 전액 삭감하고, 실제 사안이 발생하여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을 경우 예비비나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72) 「근로기준법」

제33조(이행강제금) ①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②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써 알려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액수,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금액, 부과·징수된 이행강제금의 반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노동위원회는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은 2년을 초과하여 부과·징수하지 못한다.
 ⑥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되,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⑦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지정된 기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⑧ 근로자는 구제명령을 받은 사용자가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기한이 지난 때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알려줄 수 있다.

73) 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제5항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중 하나의 유형인 영어회화전문강사는 “임용기간을 1년 이내로 하되, 계속 근무한 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영어회화전문강사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무기계약직)로 전환할 수 없다는 입장이나, 영어회화전문강사 측은 영어회화전문강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으로서 2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74)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최근 5년간 노동위원회 판정 및 이행강제금 부과 관련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납부한 이행강제금 납부 총액은 1억 8,825만원이며, 현재 노동위원회 진행 사건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소속 학교명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일	이행강제금 납부액(1~4차 납부 총액)
원촌중	2018.6.7.	62,750천원
수명중, 강신중	2019.10.10.	125,500천원

3) 평생진로교육국

가) 퇴직교직원인생2모작사업-평생교육과(사업별 설명서 1340쪽)

(단위 천원)

구분	2022년도	2021년도		전년 대비 증감		본예산 대비 주요 증감 사유
	본예산 (A)	본예산 (B)	추경예산 (C)	본예산 (A-B)	추경예산 (A-C)	
계	1,050,375	1,022,571	768,987	27,804	281,388	
교육인생이모작지원 센터운영	207,139	199,222	203,615	7,917	3,524	◦ 센터 사업 홍보 기간제근로자 채용 (1명, 8개월)
대외부서협력사업 운영	311,334	329,238	192,646	△17,904	118,688	◦ 대외·부서협력사업 봉사활동횟수 감축 (22,176회→21,168회)
봉사단운영	531,902	494,111	372,726	37,791	159,176	◦ 기초학력 봉사단 봉사활동횟수 증가 (4,704회→6,720회) ◦ 단독 봉사단 신규 운영

- 동 사업은 퇴직교직원의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한 마을교육 공동체 형성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올해는 총 59개 봉사단(1,118명)이 활동하고 있고, 퇴직교직원 인력풀 2,024명이 구축되었습니다.
- ‘퇴직교직원인생2모작사업’ 예산은 전년도보다 2천 8백만원이 증액된 10억 5천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교육인생이모작지원 센터 사업 홍보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채용 예산이 8백만원 증액되었고, 봉사활동횟수 증가에 따른 봉사단 운영 예산이 3천 8백만원 증액되었습니다.
- 현재 동 사업 예산 중 대외·부서 협력사업 운영 예산 3억 1천 1백만원의 88.3%인 2억 7천 5백만원, 봉사단 운영 예산 5억 3천 2백만원의 90.6%인 4억 8천 2백만원이 봉사활동비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퇴직교직원인생2모작사업’ 전체 예산의 72.1%에 이르고 있습니다.

[표-49] 퇴직교원 봉사단 운영 예산 현황

(단위: 천원)

사업명	2022년도 본예산	봉사활동 지원비	
		산출내역	금액
대외·부서협력사업 운영	311,334	봉사활동 13,000원*210명*8월*4.2주*3회	275,184
「Book 소리」 봉사단	38,204	봉사활동 13,000원*40명*8월*4.2주*2회	34,944
「그린에듀」 봉사단	116,232	봉사활동 13,000원*60교*4명*8월*4.2주	104,832
「기초학력」 봉사단	95,280	봉사활동 13,000원*100명*8월*4.2주*2회	87,360
「난독」 봉사단(신규)	26,792	봉사활동 13,000원*20명*8월*4.2주*2회	17,472
「아름다운동행」 봉사단	21,504	봉사활동 13,000원*30명*8월*4.2주*1회	13,104
공모 봉사단	233,890	봉사활동(개인)13,000원*30명*15회 (공모봉사단)13,000원*10명*25개단*8월*4.2주*2회	224,250
계	609,346		532,896

- 동 사업 중 교육인생이모작지원센터는 퇴직교직원들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봉사활동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교육청 자체계획⁷⁵⁾으로 설치된 것으로, 현재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예산과 인력이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서울시교육청은 관련 조례의 미제정으로 인해 그동안 자체 내부규정인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인생이모작지원센터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자원봉사 활동경비를⁷⁶⁾ 지급해 왔으나,

지난 2020년 11월 감사원에서는 자원봉사활동경비 지급과 관련하여 “지방재정법에 의거 지자체 권장사업은 지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 지출이 가능” 하다고 지적한바 있습니다.
-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동 봉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지난 2021년 10월 28일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 기본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그 근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75) 교육인생2모작 사업 기본계획(평생교육과-6001, 2016.3.30.)

76) '2021년 교육인생이모작지원센터 교육·봉사지원활동 사업 추진 계획': 1일 1회(4시간 이상) 13,000원 지원(교통비 5천원, 급량비 8천원)

- 그러나 봉사활동비의 근거로 하고 있는 교육복지 기본 조례는 기본적으로 지역교육복지센터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동 조례를 이와 성격이 전혀 다른 교육인생이모작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로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⁷⁷⁾
- 더욱이 2019년 5월에 교육감이 발의한 관련 조례에 대해 의회에서는 지속적으로 보류·미상정을 통해 간접적 반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이 동 사업을 편법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 교육청에서는 교육인생이모작지원센터운영 중 홍보인력 충원과 관련하여 별도의 인력을 고용하고 있는 바 자원봉사를 위한 동 조례의 취지와 현재 동 센터에 대한 법적 근거 부족을 고려할 때 별도 인력 채용보다 자체 봉사인력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끝으로 금번 예산안에서 교육청은 봉사단 운영 예산 5억 3천 2백만원 중 업무추진비로 1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는바,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원봉사단 설립 취지, 그리고 현재 봉사단에 교통비 및 급량비가 별도 봉사비로 지급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봉사단 운영 예산에 별도의 업무추진비를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부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표-51] 봉사단 운영 예산 중 업무추진비 편성 현황

(단위: 천원)

사업명	2022년도 본예산 (업무추진비)	산출내역
「Book 소리」 봉사단	1,220	(활동사업)20,000원*15명*3회 = 900 (평가사업)20,000원*8명*2회 = 320
「그린에듀」 봉사단	5,200	20,000원*130명*2회 = 5,200
「기초학력」 봉사단	3,120	(활동사업)20,000원*6명*1회 = 120 (평가사업)20,000원*75명*2회 = 3,000
「난독」 봉사단(신규)	1,400	(활동사업)20,000원*10명*1회 = 200 (평가사업)20,000원*30명*2회 = 1,200

77) 당시 감사원의 지적사항에는 동 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봉사활동비 지급 이외에도 센터장 선임에 있어서의 자격요건 및 채용방법 부적정 문제도 지적된바 있으므로, 봉사활동비를 포함한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모두 해소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조례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아름다운동행」 봉사단	800	20,000원*20명*2회 = 800
공모 봉사단	4,680	(활동·평가)20,000원*210명*1회 = 4,200 (심사평가)20,000원*6명*4회 = 480
계	13,762	

나) 학교밖청소년지원-민주시민생활교육과(사업별 설명서 1396쪽)

(단위: 천원)

구분	2022년도	2021년도		전년 대비 증감		본예산 대비 주요 증감 사유
	본예산 (A)	본예산 (B)	추경예산 (C)	본예산 (A-B)	추경예산 (A-C)	
계	2,034,588	2,412,903	좌동	△378,315	좌동	
청소년도움센터 '친구랑'운영	324,940	325,507	좌동	△567	좌동	
학교밖청소년 교육참여수당	968,260	963,640	좌동	4,620	좌동	
학교밖청소년 지원사업운영	595,968	962,336	좌동	△366,368	좌동	
학교밖청소년 지원위원회	3,320	3,320	좌동	-	좌동	
학습지원프로그램	142,100	158,100	좌동	△16,000	좌동	

- 동 사업은 학업중단학생에게 학업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사회적 자립을 돕기 위한 것으로, 청소년 도움센터 '친구랑' 을 운영하며 참여 학생에게 '교육참여수당' 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 교육청은 학교밖청소년지원사업 예산으로 전년도 보다 3억 7천 8백만원 감액된 20억 3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는바, 이 중 학교밖청소년교육참여수당은 교육참여수당 지급대상 증가에 따라 5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표-52] 학교 밖 청소년 교육참여수당 지급 기준

○ 지원대상: 만9세~18세의 학교 밖 청소년 중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에 등록된 수당지급 요건* 충족자
*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프로그램 주 2회 출석기준 60%(월 5회) 이상 충족
○ 지원방법: 학령기 기준에 따른 수당 매월 지원

학령기 기준	지급액(매월)	1년 기준	지급방법	비 고
초	100,000	1,200,000	청소년증교통카드 (캐시비)충전	
중	150,000	1,800,000		
고	200,000	2,400,000	체크카드 충전	현금인출 제한 및 클린카드 기능 탑재

○ 지원범위: 학업에 복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항목

- 현재까지 교육참여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하여 수당을 지급받은 청소년은 올해의 경우 1월부터 10월까지 3,365명(누적 인원)이며, 2021년도 학교밖청소년교육참여수당 예산은 9억 6천만원이 편성되어 10월말 현재 5억 9천 6백만원이(62.1%) 집행되었습니다.

[표-53] 2021년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참여수당 지급 인원

(단위 천원)

구분		2021년											
월 지급 인원	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대상	수령	대상	수령	대상	수령	대상	수령	대상	수령	대상	수령
	초		42	42	43	40	42	40	43	38	44	41	46
중		64	59	60	52	59	53	64	58	66	62	74	67
고		274	240	255	233	241	220	226	206	237	211	242	226
총 인원		106	101	103	92	101	93	107	96	110	103	120	109
지급액		61,050		58,400		55,950		53,700		55,600		59,450	

구분		2021년									
월 지급 인원	월	7월		8월		9월		10월		계	
		대상	수령	대상	수령	대상	수령	대상	수령	대상	수령
	초		47	44	51	46	57	53	58	55	473
중		77	76	82	74	80	72	83	78	709	651
고		257	242	270	236	259	228	245	231	2,506	2,273
총 인원		381	362	403	356	396	353	386	364	3,688	3,365
지급액		64,200		62,900		61,700		63,400		596,350	

- 이와 관련하여 교육참여수당의 지난 2년간 집행 추이를 살펴보면, 2019년도 교육참여수당 집행률은 32.8%로 매우 저조하였으나 2020년도 집행률은 85.8%에 달하였는바,

이는 교육청의 학교밖청소년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청소년이 증가한 것도 있지만, 교육청이 서울시와 연계하여 ‘꿈드림’에 78) 등록된 학생들에게 까지 교육참여수당을 확대 지급한 것이 주된 이유라 할 수 있습니다.

[표-54] 2021년도 교육참여수당 대상별 지급 현황

(단위: 명)

구분		2021년										
월 지급 인원	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계
	교육청	293	277	255	240	254	268	285	278	272	287	2,709
	꿈드림	48	48	58	62	60	67	77	78	81	77	656
총 인원		341	325	313	302	314	335	362	356	353	364	3,365

- 이것은 교육청이 학교밖청소년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자 신규 학교밖 청소년의 발굴이 아니라 기존의 서울시 참여자를 포함시킨데 따른 것으로 교육재정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재원 역시 교육청-서울시-자치구와 분담하여 재원부담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더욱이 금번 예산안에서 교육참여수당의 1인당 지급 금액은 초·중·고 별 10만원·15만원·20만원으로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예산 편성시 초등학생 10만원의 단가를 누락하였는바79), 이는 사업부서의 안이한 예산 편성 관행을 방증하는 것으로 주의 및 변경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끝으로 교육참여수당의 정산은 수당을 지급받은 청소년이 월 1회 ‘수당 사용 셀프보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정작 교육참

78) 여성가족부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전국 단위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서울시에는 26개의 센터가 있음(시 1개, 자치구 25개).

79) (200,000원×250명×12월)+(150,000원×200명×12월) = 960,000천원 ※ 100,000원 단가 누락

여수당 사업의 효과 관련 분석은 지난 2019년 10월 이후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는 동사업 예산이 그 효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편성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현재 서울시교육청의 교육참여수당이 올바르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동 사업이 어느 정도의 효과를 내고 있는지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평가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 특성화고실습실유해환경개선-진로직업교육과(사업별 설명자료 1653쪽)

(단위: 천원)

구분	2022년도	2021년도		전년 대비 증감		본예산 대비 주요 증감 사유
	본예산 (A)	본예산 (B)	추경예산 (C)	본예산 (A-B)	추경예산 (A-C)	
계	80,000	3,580,000	좌동	△3,500,000	좌동	
실험실습실환경개선 (공립)	32,000	1,425,000	좌동	△1,393,000	좌동	
실험실습실환경개선 (사립)	48,000	2,155,000	좌동	△2,107,000	좌동	

- 동 사업은 안전하고 쾌적한 특성화고 실습실 환경 조성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 35억 8천만원의 97.8%인 35억원이 감액된 8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 그러나 지난 3년간 특성화고 실습실 안전사고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올해 10월의 사고발생건수는 지난 해의 사고발생 건수(3건(9.7%))를 넘어서고 있는 바, 위험성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성화고실습실유해환경개선 예산을 대폭 감액한 것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표-55] 최근 3년간 특성화고 실습실 안전사고 발생 현황

(단위: 건)

구분	찢림 및 베임	충돌	화상	기타	계
2019	15	9	10	14	48
2020	15	6	6	4	31
2021.10.	16	7	7	4	34

○ 더욱이 동 사업의 경우 매년 편성된 예산이 전액 집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을 대폭 감축한 것은 안전에 대한 교육청의 인식이 안이한 것으로 비쳐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청의 설명이 필요하고 필요할 경우 예산 증액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표-58] 특성화고실습실유해환경개선 연도별 추진 현황⁸⁰⁾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예산	21억원	35.8억원	35.8억원	35.8억원	38억원(예정)	166.4억원
학교 수	12교	20교	27교	27교	27교(예정)	113교
개선 실습실 수	27실	87실	88실	77실	99실(예정)	378실
비중(누계)%	7.1(7.1)%	23.0(30.1)%	23.3(53.4)%	20.4(73.8)%	26.2(100)%	100%

[표-59] 최근 3년간 예산 집행 현황

(단위: 천원)

연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차년도이월 (c)	불용액 (a-b-c)
2019	3,580,000	3,580,000	-	-
2020	3,580,000	3,580,000	-	-
2021	3,580,000	3,580,000	-	-

80) 특성화고 실습실 환경·안전사고 관련 의원 요구자료(2021.10.26. 제출)

라) 당뇨학생건강관리지원-체육건강문화예술과(사업별 설명자료 1824쪽)

(단위: 천원)

구분	2022년도	2021년도		전년 대비 증감		본예산 대비 주요 증감 사유
	본예산 (A)	본예산 (B)	추경예산 (C)	본예산 (A-B)	추경예산 (A-C)	
계	552,000	-	좌동	552,000	좌동	
소아당뇨학생관리지원	552,000	-	좌동	552,000	좌동	

- 동 사업은 2019년 12월 제정된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⁸¹⁾ 따라 학교 내 주사 투약 공간 조성 및 응급키트 지원을 위해 신규로 5억 5천 2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표-60] 서울 당뇨 학생 현황

구분	학교 수(교)	학생 수(명)
유치원	7	7
초등학교	101	112
중학교	104	123
고등학교	120	156
계	332	398

[표-61] 당뇨학생건강관리지원 예산 편성 세부 내역

학교회계전출금		552,000 천원
- 소아당뇨학생환경지원	2,000,000원× 76교 =	152,000 천원
- 응급대처지원	1,000,000원×400교 =	400,000 천원

- 동 예산 편성 세부 내역 중 ‘소아당뇨학생환경지원’은 당뇨 학생이 안정된 환경에서 인슐린 주사를 투약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파티션 등의 구입비를 76교에 2백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인슐린 주사를 위한 별도의 파티션 구입비를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81)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응급조치 등의 보호체계

- 그러나 학교장터(S2B) 사이트 검색 결과에 따르면 보건실 파티션의 시중 가격은 20만원 안팎에 불과하나 금번 예산안에서는 단순히 공간을 분리하기 위한 파티션 등의 구입비로 학교당 2백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바 10배가 넘는 산출 기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고 단가에 대한 면밀한 사전조사후 삭감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5) 교육행정국

가) 사학기관운영평가(사업별 설명자료 1901쪽)

(단위: 천원)

구분	2022년도	2021년도		전년 대비 증감		본예산 대비 주요 증감 사유
	본예산 (A)	본예산 (B)	추경예산 (C)	본예산 (A-B)	추경예산 (A-C)	
계	105,780	77,140	좌동	28,640	좌동	
사학기관운영평가운영	105,780	77,140	좌동	28,640	좌동	◦ 평가 우수법인 포상금 증액

○ ‘사학기관운영평가’는 사학기관의 재정 건전성, 운영의 공공성, 학교 운영의 효율성 등을 평가하고 결과를 공개하여 사학기관의 공공성 및 책무성을 강화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보다 2천 9백만원 증액된 1억 6백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동 예산 증액의 주요 원인은 동 사업 중 우수법인 포상금 지급액이 전년도(7천만원)보다 2천 9백만원 증액된데 따른 것입니다.

[표-62] 사학기관 운영평가 평가체계

평가영역	비중	평가항목	평가지표 수	배점	평가기구	
I. 법인재정	25%	1. 법정부담금의 적정성	3	13	사학기관 운영평가단	
		2. 수익용기본재산 관리의 적정성	4	12		
II. 법인운영	40%	1. 법인이사회 운영 정확성	3	11		
		2. 법인 운영 및 관리의 공공성	3	14		
		3. 교직원 인사관리 적정성	4	15		
III. 학교행정	35%	1. 학교재정 운영의 건전성 및 효율성	5	22		
		2. 학교행정의 효과성	3	13		
3개 영역	100%	7개 항목	25개	100점		
가 점		교원 신규임용 위탁선발 실시		+2		
감 점		관할청 행정처분 미이행		(-5)		
		학교급식 운영 부적정		(-5)		

- 사학기관운영평가 사업 예산은 크게 운영평가를 위한 포상금, 평가를 위한 운영비, 업무추진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전체 예산 1억 6백만원의 93.6%인 9천 9백만원이 우수법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사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은 「교육기본법」,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등에 의해 법을 준수해야만 하는 공적 책임이 있는 기관이고, 사학에 근무하는 교직원에 대한 급여 또한 재정결함보조금을 통해 지원하여 공무원에 준하는 자격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법적 기준에 따라 학교를 운영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 더욱이 포상금의 기준이 되는 사학기관 평가 항목인 법정부담금의 적정성, 법인 이사회 운영의 정확성, 교직원 인사관리의 적정성 등은 사학기관으로서 당연히 준수해야 하는 법적 사항으로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이에 응당한 법적 제재가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 이런 점에서 정상적으로 법에 따라 운영하는 사학을 우수법인으로 선정하여 이들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자칫 사학에 대한 과도한 포상금 남발로 비쳐질 수 있는 바, 법적 평가항목을 준수하지 못한 사학법인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부여하는 것이 사학의 건전성 제고에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 또한 교육청은 사학기관 평가의 가점사항으로 교원 신규임용 위탁선발을 추가로 규정하고 있는바 교원 신규임용 위탁선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별도로 별도로 주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한 사안에 대한 가점 부여는 인센티브의 중복 부여라고 할 수 있는 바⁸²⁾ 평가 가점에 대한 재검토가

82) 현재 사립학교 신규 교원 임용시 서울시교육청에 위탁선발할 경우 해당법인을 기준으로 2차 시험 운영비 5백만원, 학교운영비 2천만원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음. 참고로 지난 2021년 9월 24일 「사립학교법」의 개정예에 따라 내년부터 사립학교 신규 교원 임용 위탁선발이 의무화됨.

「사립학교법」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① ~ ⑩ (생략)

⑩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원의 임용권자는 제10항에 따른 공개전형 실시할 때에는 필기시험을 포함하여야 하고, 필기시험은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표-63] 우수기관 포상금 지급내역 (2021년)

포상 부문		포상금 지급내역	지급액(천원)	시상자
종합평가 우수기관(6)	종합 금상	1개 법인 × 11,000천원	11,000	교육감
	종합 은상	1개 법인 × 9,000천원	9,000	
	종합 우수상	1개 법인 × 8,000천원	8,000	
평가영역별 우수기관(3)	법인재정 우수상	2개 법인 × 6,000천원	14,000	
	법인운영 우수상	2개 법인 × 6,000천원	14,000	
	학교행정 우수상	2개 법인 × 6,000천원	14,000	
계		9개 법인	70,000	

나) 공영형사립학교선정운영(사업별 설명자료 1904쪽)

(단위: 천원)

구분	2022년도	2021년도		전년 대비 증감		본예산 대비 주요 증감 사유
	본예산 (A)	본예산 (B)	추경예산 (C)	본예산 (A-B)	추경예산 (A-C)	
계	617,600	620,000	좌동	△2,400	좌동	
공영형사립학교선정운영	617,600	620,000	좌동	△2,400	좌동	◦ 위원 심사수당 감액

- ‘공영형사립학교선정운영’은 사립학교의 혁신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이사정수의 일부를 교육청 추천 공공이사로 선임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한 사립학교를 대상으로 환경개선비 및 특색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보다 2백만원 감액된 6억 1천 8백만원의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 현재 대다수의 사립학교의 경우 재정결함보조 및 고교무상교육 등 공립학교 수준의 국가 재정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립학교가 연간 3억

원의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해 법인 이사를 공공이사로 운영할지, 「사립 학교법」 제14조⁸³⁾보다 강화된 교육청 선임이사 1/3 이상과 감사 1명을 수용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특히 현재 ‘공영형 사립학교’의 취지와 형태가 유사한 ‘공영형 사립유치원’ 사업의 경우, 2018년 이후 추가 선정이 없는 등 사업추진이 미진한 상황인바, ‘공영형 사립학교’ 역시 그 정상적인 추진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표-64] 2021년 공영형사립학교 공모 추진 과정

- ▶ 공영형 사립학교 공모 계획 안내(21.1.18.~210.)
- ▶ 법인협의회에서 각 학교법인에 불참 의견 통보 및 우리청에 반대이견 제출(21.1.21.)
- ▶ 학교지원과장 등 서울법인협의회장 방문 협의(21.1.29.)
- ▶ 공영형 사립학교 공모기간 연장 및 세부사항 안내(21.2.9.)

- 이에 대해 교육위원회에서는 2021년 본예산 심사 당시 문제를 제기하였으나⁸⁴⁾, 서울시교육청은 2020년 사업 계획 수립 당시 충분한 검토없이 6억 2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는바,

금년에 진행된 2차례에 걸친 공영형사립학교 공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신청한 사학기관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고 2021년 예산은 전액 불용 처리될 예정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은 별도의 개선대안 없이 2022년도에도 2021년과 동일하게 전례답습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는바, 동 사업의 추진에 대해서는 사업비 삭감 등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83) 제14조(임원) ① 학교법인에는 임원으로서 7명 이상의 이사와 2명 이상의 감사를 두어야 한다. 다만, 유치원만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에는 임원으로서 5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를 둘 수 있다.

② 이사 중 1명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된다.

③ 학교법인은 제1항에 따른 이사 정수(定數)의 4분의 1(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에 해당하는 이사(이하 “개방이사”라 한다)를 제4항에 따른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2배수 추천한 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84)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2020. 12.). ‘202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다) 학교시설개방우수학교운영(사업별 설명서 1999쪽)

(단위 천원)

구분	2022년도	2021년도		전년 대비 증감		본예산 대비 주요 증감 사유
	본예산 (A)	본예산 (B)	추경예산 (C)	본예산 (A-B)	추경예산 (A-C)	
계	4,500,000	5,100,000	좌동	△600,000	좌동	
공사립학교운영비지원	2,400,000	3,000,000	좌동	△600,000	좌동	
시설보수비지원(서울시)	2,100,000	2,100,000	좌동	-	좌동	

- ‘학교시설개방우수학교운영’은 지역주민에게 시설을 개방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운영비 및 시설보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보다 6억원 감액된 45억원이 편성되었으며, 동 사업 중 ‘공사립학교운영비지원’은 운동장 및 체육관 등을 개방하는 학교에 인센티브 및 냉·난방가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2022년에 2억 4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2017~2019년기간동안 각급 학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⁸⁵⁾, 학교 개방 인센티브 확대 지원에도 불구하고 학교 개방 건수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 학교(640개교) 중 47.5%(304개교)는 구간 최하위 수준인 주당 1시간~10시간 정도로만⁸⁶⁾ 시설을 개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표-65] 학교시설 사용허가 현황(2017년~2019년)

(단위 건 백만원)

시설명	2017년		2018년		2019년	
	허가건수	사용료	허가건수	사용료	허가건수	사용료
운동장	4,967	2,469	4,189	2,067	3,702	1,959
체육관	2,406	3,802	2,380	3,720	2,754	3,644
계	4,967	2,469	4,189	2,067	3,702	1,959

85) 2021년 지원은 2021.11.14.일 기준, 시행되지 않고 있음. 개방시간을 기준으로 7구간으로 구분하여 교당 최소 2백만원에서 최대 2천 4백만원까지 학교운영비를 지원하였으며 냉·난방을 가동한 학교에는 최소 2천원에서 최대 5백만원을 별도 지원하였음.

86) 1년 52주 기준.

[표-66] 2019년 개방시간 구간별 지원액

(단위: 교, 천원)

구간	개방시간	학교 수 (A)	구간평균 개방시간	기준 금액 (B)	개방 지수 (C)	교당 지원액 (D)=(B)×(C)	구간별 지원총액 (E)=(A)×(D)
1	1,550시간 초과	62	2,011.7	8,906	2.67	23,736	1,471,632
2	1,300시간 초과 ~ 1,550시간 이하	56	1,415.6	8,906	1.88	16,703	935,368
3	1,050시간 초과~ 1,300시간 이하	75	1,179.8	8,906	1.56	13,920	1,044,000
4	800시간 초과 ~ 1,050시간 이하	71	920.1	8,906	1.22	10,856	770,776
5	550시간 초과 ~ 800시간 이하	72	683.7	8,906	0.91	8,067	580,824
6	300시간 초과 ~ 550시간 이하	103	411.4	8,906	0.55	4,854	499,962
7	50시간 이상 ~ 300시간 이하	201	167.6	8,906	0.22	1,977	397,377
계		439					5,302,562

○ 더욱이 2020년의 경우에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학교시설 개방 실적은 더욱 낮아졌는 바 지난 1년간 학교시설을 개방한 학교는 171교로 전년 대비 약 1/4로 축소되었고, 개방시간별 분포에 있어서도 50시간 이상~290시간 이하로 개방한 학교가 128교, 290시간 초과~530시간 이하로 개방한 학교가 22교이며, 530시간을 초과한 학교는 21교로 나타났습니다.

[표-67] 2020년도 학교시설 개방 현황

(단위: 교, 천원)

구간	개방시간	학교 수
1	1,550시간 초과	3
2	1,300시간 초과 ~ 1,550시간 이하	2
3	1,050시간 초과 ~ 1,300시간 이하	1
4	800시간 초과 ~ 1,050시간 이하	5
5	550시간 초과 ~ 800시간 이하	10
6	300시간 초과 ~ 550시간 이하	20
7	50시간 이상 ~ 300시간 이하	130
계		171

-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학교시설을 개방한 학교가 대폭 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개방 시간도 종전의 기준상 하위수준인 5~7구간에 머물러 있었던 바, 이러한 상황은 코로나19가 확대 지속된 2021년에도 동일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런 점에서 교육청이 불용이 예상되는 전년도와 거의 유사하게 사업예산을 편성한 것은 과도한 예산편성으로 판단되는 바, 동 예산에 대해서는 2020년 개방실적을 참조하여 감소된 지원 학교 수(268개교)만큼 감액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⁸⁷⁾

라) 그린스마트스쿨(사업별 설명자료 2080쪽)

(단위 천원)

구분	2022년도	2021년도		전년 대비 증감		본예산 대비 주요 증감 사유
	본예산 (A)	본예산 (B)	추경예산 (C)	본예산 (A-B)	추경예산 (A-C)	
계	52,020,000	2,669,000	3,889,000	49,351,000	48,131,000	
BTI사업운영	3,693,000	-	좌동	3,693,000	좌동	◦ 사업시행자 선정 등 (BTL 9교) 증액
개축타당성검토용역	200,000	-	좌동	200,000	좌동	◦ 개축 타당성검토 (10교) 증액
공립초설계공모보상비, 설계비(시설비)	33,719,000	-	좌동	33,719,000	좌동	◦ 둔촌초, 위례초 개축사업 추진 증액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운영	3,421,340	-	좌동	3,421,340	좌동	◦ 전환준비금 지원 및 홍보, 연수 등 증액
그린스마트스쿨지원 사업분담금	1,677,000	559,000	좌동	1,118,000	좌동	◦ 시도 분담금 증가 증액 (교육부 미래교육 추진담당관-1465)
긴급시설보수비	2,100,000	-	좌동	2,100,000	좌동	◦ 학생안전 관련 긴급 유지보수 지원 증액
도시계획완화변경용역	200,000	-	100,000	200,000	100,000	◦ 도시계획완화변경 (4교) 증액
미래학교조성지원	99,660	-	좌동	99,660	좌동	◦ 미래학교지원단 연수 증액
사전기획용역	1,010,000	1,760,000	2,880,000	△750,000	△1,870,000	◦ 물량 감소 감액
설계공모보상비	5,900,000	-	좌동	5,900,000	좌동	◦ 공모안 작성비용 보상 증액
타당성조사용역및 수수료	98,140,000	350,000	좌동	△350,000	좌동	◦ 대상학교 없음 감액

87)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인센티브는 전년도 학교별 개방율을 집계한 후 다음연도에 집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따라서 2022년도 예산에 편성되는 인센티브는 2021년도의 학교시설 개방 결과를 반영하는 것임.

- ‘그린스마트스쿨’은 40년 이상 노후 건물을 개축 또는 리모델링하여 학교 공간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전년도 보다 493억 5천 1백만원 증액된 520억 2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 동 사업중 그린스마트미래학교 ‘BTL 사업운영’은 선정 학교 중 민자사업(BTL)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학교의 설계제안비용보상비 및 설계용역비, 업무추진비 등을 편성한 것으로,

2021년 선정 BTL 사업대상 학교는 총 9개교로, 8개 학교는 2개 학교씩 묶어 번들링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표-68] BTL 추진학교

(단위: 백만원, 부가세 제외)

단위 사업	사업명	학교수	그린스마트 사업물량(m ²)		사업금액	사업방식
			개축	존치동 리모델링		
1	동구로초 외 1교(도신초) 개축 임대형 민자사업(BTL)	2	18,147	1,322	43,933	번들링
2	금호여중 외 1교(청운중) 개축 임대형 민자사업(BTL)	2	18,324	1,860	43,875	번들링
3	유현초 외 1교(수유초) 개축 임대형 민자사업(BTL)	2	13,881	1,350	32,486	번들링
4	신화중 외 1교(자양초) 개축 임대형 민자사업(BTL)	1	18,204	2,498	43,446	번들링
5	청량중학교 개축 임대형 민자사업(BTL)	1	10,940	2,082	26,292	-
총계		7	68,556	7,030	163,7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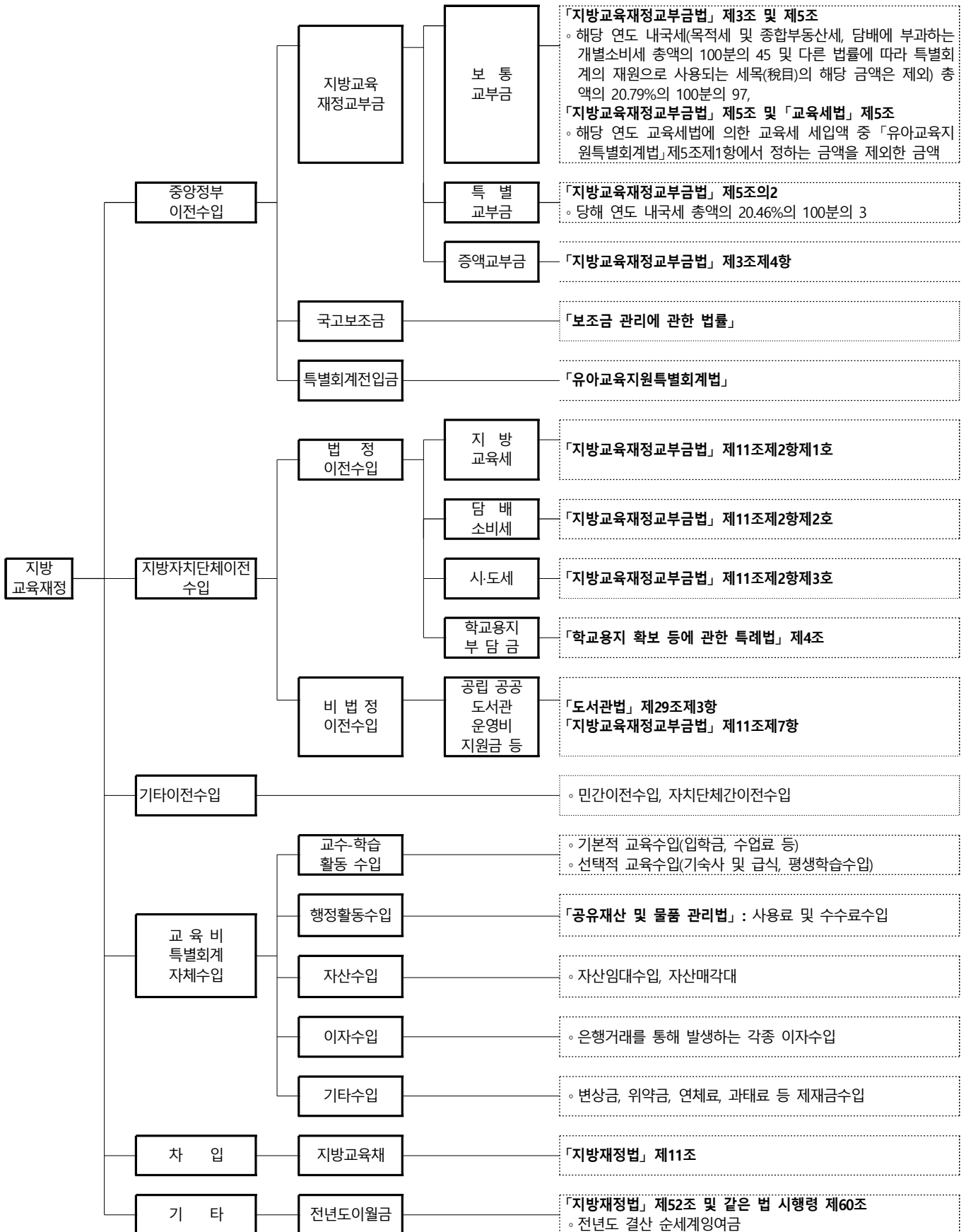
-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자양초가 학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 반대 의견이 다수로 나타나 사업을 최종 철회하면서 BTL 사업은 최종 8개 학교로 운영하게 되었는바,

동 사업에서 9개교를 대상으로 편성된 36억 8천 1백만원 중 1개교 예산인 일반용역비(제안비용보상비) 2억 2천만원, 그 외 운영비 1천 8백만원, 업무추진비 약 1백만원 등 총 2억 3천 9백만원은 감액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운영비			3,681,000	천원
- 위원회속기료	200,000원×30회	=	6,000	천원
- 행사용품비	500,000원×10회	=	5,000	천원
- 위탁사업비	15,000,000원×10회	=	150,000	천원
- 일반용역비(BTL기본설계용역비)	220,000,000원×7교	=	1,540,000	천원
- 일반용역비(제안비용보상비)	220,000,000원×9교	=	1,980,000	천원
· 업무추진비			12,000	천원
- 사업추진경비	20,000원×20명×30교	=	12,000	천원

- 현재 그린스마트미래학교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사업추진에 대한 교육청의 안이한 대응으로 학부모 등의 사업반대 민원이 발생하여 당초 2021 사업 대상 57개교 중에 16개교가 개축 및 리모델링 사업을 철회한 상황인바, 서울시교육청은 향후 BTL 사업 등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 추진시 충분한 홍보와 소통과정을 통해 국가정책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상으로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 세입예산 구조



특별시 세목별 조세체계

